nabo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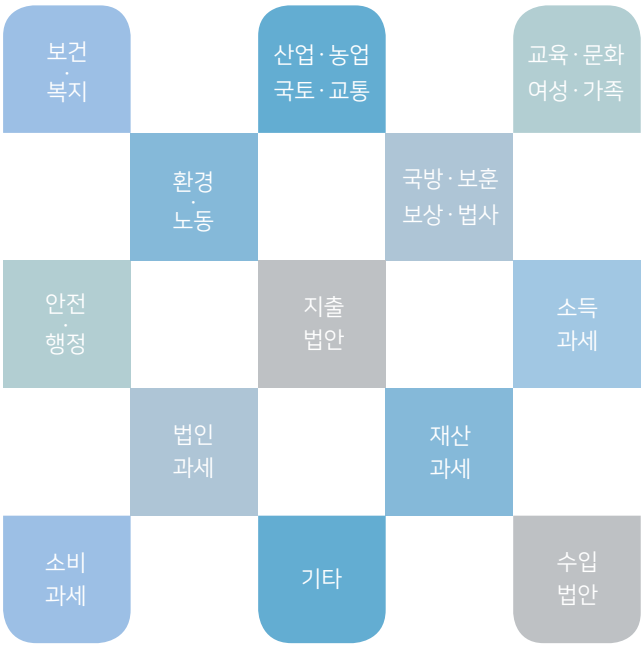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총 괄 |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양성선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이은정 행정비용추계과장
심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작 성 | 박연서, 최천규, 차병섭, 성선애
윤주철, 정혜윤, 이주호, 손명동
이은미, 김윤희, 유희수, 여은구
김진태, 남정희, 이미연, 정혜승
김혜리, 신영임, 백경엽, 강민지
태정림, 박지원, 장윤정, 김세화
채은동, 김효경

지 원 | 김정선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 02) 788-3778 | ac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2018. 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8. 3. 2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3월 1일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안된 의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보고서에 게재된 일부 비용추계 사례의 경우,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비용추계서의 추계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안의 발의 시점 이후에 생산된 최신 정보를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각 추계 사례의 본문에 명시된 자료의 출처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사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안비용추계를 통하여 제·개정되는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발의 법률안의 비용추계 전담기관이 되면서, 2014년에 557건이던 법안비용추계 요구가 2015년 1,994건, 2016년 3,020건, 2017년 3,407건으로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법안비용추계업무가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추계기법의 정교화와 의무지출 모형 개발·개선을 통하여 추계의 합리성과 법률안과의 정합성도 꾸준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는 지난해에 이어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률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출법안'과 '수입법안'으로 나누어 법률안별로 주요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쟁점이 되는 추계변수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비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내용 변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국회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17년 추계세제분석실 신설에 따라 「2017 미리 보는 비용추계」에서 '지출법안'만 다루었던 것과 달리 '수입법안'에 대한 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지출과 수입 관련 법률안 전반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가 국회의원님들의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요 약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의 발간취지 및 구성 ·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간취지

- 법안의 주요제도 소개, 추계의 변수를 선별하여 시나리오 별로 추계정보 제공
- 의원발의 빈도가 높은 법안의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하여, 유사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안을 성안 · 발의할 수 있도록 구성

구성 · 편제

법안비용추계제도

• 법안비용추계

법안비용추계란 발의 ·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으로,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재정전반에 걸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비용 - 편익분석과는 소요비용을 추계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안의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화폐적 · 회계적 비용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는 비용 - 편익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입법영향분석과는 입법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입법에 따르는 재정적 측면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가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입법영향분석과 차이가 있음

• 국회의 법안비용추계 연혁

1973년 「국회법」(1973.2.7. 전부개정)에서 예산명세서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실제 예산명세서가 첨부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국회인 1988년부터임. 제13대국회부터 제16대국회까지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총 의원발의 법안건수 대비 3.8% (121건/3,171건)에 불과하였으나, 제17대국회(2004.5.30.~2008.5.29.)에서 2005년 「국회법」이 개정되고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안비용추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음

2014년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의안의 심사보고서에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회답건수와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건수가 크게 증가함

• 법안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단위: 건)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합 계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전체	첨부
제17대국회 ('04.5.30~'08.5.29)	5,728	1,372	1,102	245	659	17	7,489	1,634 (21.8%)
제18대국회 ('08.5.30~'12.5.29)	11,191	3,897	1,693	522	1,029	9	13,913	4,428 (31.8%)
제19대국회 ('12.5.30~'16.5.29)	15,444	4,077	1,093	328	1,285	23	17,822	4,428 (24.8%)
제20대국회 ('16.5.30~)	10,761	2,348	666	153	551	178	11,978	2,679 (22.4%)

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상 제안된 법률안 기준 (2018. 3. 15.)

• 법안비용추계서 회답 실적

(단위: 건)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출	54	145	146	143	402	442	455	414	661	685	376	1,623	2,521	2,921
수입	5	23	40	78	177	146	109	171	194	181	181	371	499	486
합계	59	168	186	221	579	588	564	585	855	866	557	1,994	3,020	3,4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비용추계서 회답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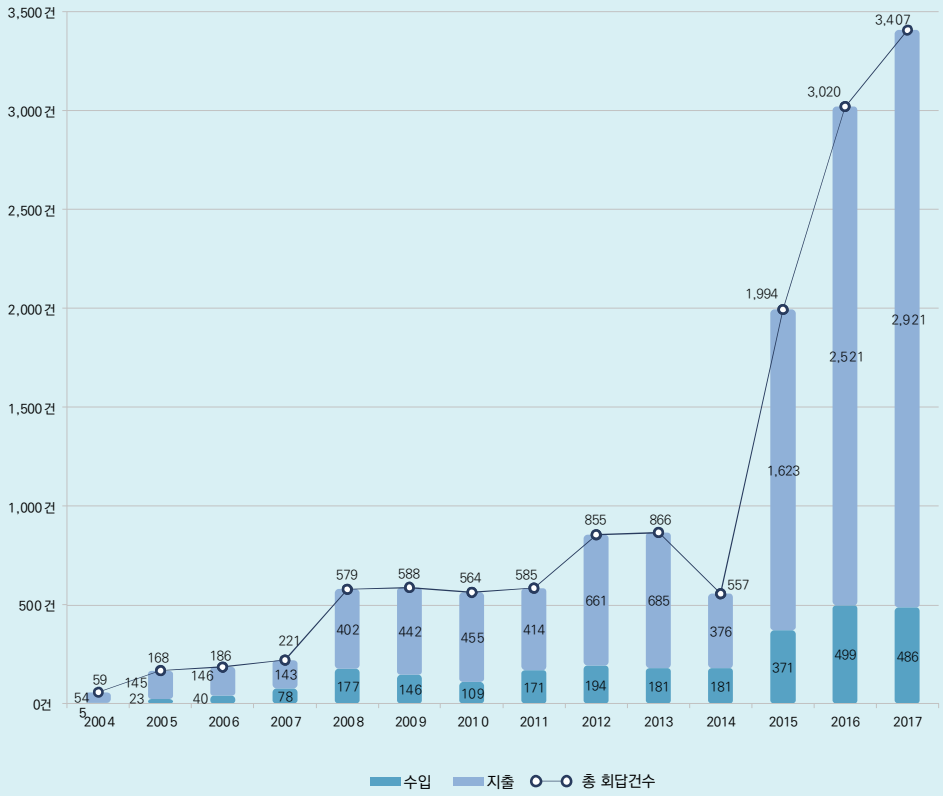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법안비용추계서 요구 및 제출 절차

법안비용추계 요구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원, 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장)

법안비용추계서 작성

- 지출·수입 증감(추계세제분석실)
- 요구된 법안비용추계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대상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

법안비용추계서 회답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국회예산정책처장 → 의원, 위원회)

국회의장에게 제출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 재정수반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발의(의원, 위원회)
- 이미 발의된 의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만 제출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요약 / 지출법안

보건·복지 분야

국민연금 산업재해 크레딧 신설: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액 계산 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의 50%로 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정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01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법」	• 201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할 경우(시나리오1) 국민연금기금은 연평균(2018~2060년) 10조 1,323억원(불변가격)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 뒤 고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2018~2060년) 20조 2,647억원(불변가격)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법」 등	•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2인 가족 기준 소득수준 90%이하 가구로 적용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7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전체 가구로 적용할 경우 (시나리오2) 연평균 3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출산 순위별로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5.5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장애인활동인력 급여 인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인력에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액의 120%(시나리오1), 130%(시나리오2), 150%(시나리오3)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각각 연평균 2,318억원, 2,955억원, 4,22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출산수당 지급: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 출산시 1회 1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95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5,9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의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모든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임산부 중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에게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억 1,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준연금액 기준 조정: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7조 2,97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5조 9,79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만 65세 이상 노인 50%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3조 9,9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 · 공립화: 「영유아보육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841억 7,500만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601억 2,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및 감경비율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 치매 환자를 추가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076억원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추가 급여비 및 연평균 415억원의 정부부담 추가재정 소요 예상 •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 감경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64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 및 연평균 62억원의 정부부담 추가재정소요 예상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약사법」	• 심야약국(8시간 운영)에 시간당 3만원, 공휴일 약국에 일 15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77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심야약국(3시간 운영)에 시간당 4만 5천원, 공휴일 약국에 일 30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80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심야약국(3시간 운영)에 시간당 3만원, 공휴일 약국에 일 15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133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산업·농업·국토·교통 분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추계기간 동안 대형화재 미발생으로 가정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사업결산잉여금 등으로 조성가능할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 추계기간 동안 특정연도에 대형화재 1회 발생으로 가정 시, 피해규모를 2005년 대구서문시장 화재(189억원 피해)로 볼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6억 6,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피해액 규모를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469억원 피해)로 볼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5억 8,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만을 반영 시(시나리오1) 연평균 8,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전부와 민영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일부 포함 시(시나리오2) 연평균 9억 8,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상향 조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0억 6,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87억 6,900만원, 최소 1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38억 6,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6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국비 연평균 74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지방비 연평균 17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3) 지방비 연평균 26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협의체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9억 5,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7억 2,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교육·문화·여성·가족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1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0억 6,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가정하여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1억 2,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가정하여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68억 3,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고교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법」 등	•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운영비(보호자 부담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2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급식운영비(보호자부담분)와 식품비(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조 7,1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환경·노동 분야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고용보험법」	•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당연가입 대상으로 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19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인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고용보험법」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97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액을 월 150만원, 하한액을 월 80만원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40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하한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80%로 각각 정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5,41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지원: 「환경보건법」	• 어린이(0~12세)에 대한 환경성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 발생 시 진료비용 지원 • 어린이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100% 지원 시(시나리오1) 연평균 839억원, 50% 지원 시 (시나리오2) 연평균 42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만원/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9,341억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3,43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국선전담 변호 지원' 추가: 「법률구조법」	•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지원 및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등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인력을 두는 경우의 재정소요 추계 • 사무인력을 본부에만 4명 두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억 8,100만원, 각 지부 1명 포함 총 22명을 두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4억 4,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집합건물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0억 3,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별(17개 시 · 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77억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안전·행정 분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국고 보조: 「지진 · 화산재해 대책법」	• 내진보강 보조사업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연간 20,816개동의 내진보강 비용 10~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1)연평균 1,231~6,15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연간 79,811개동의 내진보강 비용 10~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721억원~2조 3,60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복구 시 국고보조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택 전파 및 반파에 대한 국고 지원 시 부담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담률 30% 적용 시(시나리오1) 연평균 7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부담률 80% 적용 시(시나리오2) 연평균 21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소득과세 분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총급여 기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12%의 공제율을 적용(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10→12%)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1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한도를 차등적으로 축소(취학전아동·초중생 300→100만원, 고등학생 300→200만원, 대학생 900만원→0원)하는 경우 연평균 6,80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해당 비용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4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8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52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장려세제의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완화(1,300~2,500→ 1,700~3,000만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77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장려세제의 부양자녀 연령요건을 완화(18세 미만→20세 미만)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22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자녀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2억원 미만→2.8억원 미만) 하는 경우 연평균 17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근로자 중 3년 이상 8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5%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근로자 중 8년 이상 13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10%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3,34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법인과세 분야

법인세율 조정 (인상·인하): 「법인세법」	• 현행 10~25%의 세율을 7~20%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7.48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현행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25%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4) 연평균 1.30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최저한세율 조정 (인상·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10%를 각각 4%, 7%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82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81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4년)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7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함(3% → 5%)과 동시에 일몰기한(4년)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82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31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93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6,61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95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설비투자세액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환경보전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33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수준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29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재산과세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3억원 상향조정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조 50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1세대 1주택 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액을 3억원씩 상향조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1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구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재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로, 과표 50억원 초과시 60% 세율 적용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연평균 8,56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 등에서 3% ('18년 : 5%)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78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신고세액공제율을 2019년부터 1%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069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고 있는데, 과세강화를 위해 차감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증가 추계 •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8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대 · 중견기업에 한하여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59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소비과세 분야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1) 연평균 5,230억원,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2) 연평균 6,613억원, 1억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3) 연평균 7,96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납부면제점을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시나리오4) 연평균 8,74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택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부탄 1kg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 감면 제도를 5년간 일몰연장 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1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제도를 5년간 일몰연장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46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개별소비세법」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9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50%인 6,000원을 감면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기타 분야

지방세 최소납부 제도: 「지방세특례 제한법」	• 유치원 관련 지방세감면제도를 최소납부제도(감면율 85%) 예외항목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1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현행 부가가치세입의 100분의 11을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는 것을 16%까지 연간 2~3%p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3조원의 국세수입 감소와 동일한 액수 지방세입 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5%p, 2020년부터 현재보다 10%p 인상 시(시나리오2) 연평균 8.8조원, 2019년부터 10%p 인상 시(시나리오3) 연평균 9.6조원의 국세수입 감소와 동일한 액수 지방세입 증가 예상

CONTENTS

제 1 장
지출법안

I. 보건 · 복지 분야 • 3

1. 국민연금 산업재해크레딧 신설:「국민연금법」 ····· 3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국민연금법」 ····· 8
3.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등 ····· 13
4. 장애인활동인력 급여 인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19
5. 출산수당 지급:「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22
6.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4
7.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준연금액 기준조정:「기초연금법」 ···· 27
8.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 · 공립화:「영유아보육법」 ··· 30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비율 상향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3
10.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약사법」 ····· 37

II.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 41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지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41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45

3.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인의 안전 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48
4.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재해 보험법」 ····· 51
5.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54

III. 교육 · 문화 · 여성 · 가족 분야 • 57

1.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57
2.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62
3. 고교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법」 등 ····· 65

IV. 환경 · 노동 분야 • 69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고용보험법」 ···· 69
2.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고용보험법」 ····· 73
3.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지원: 「환경보건법」 ···· 77

V. 국방 · 보훈 · 보상 · 법제사법 분야 • 81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81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국선전담변호 지원' 추가: 「법률구조법」 ····· 84
3.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8

CONTENTS

VI. 안전 · 행정 분야 • 91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국고 보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91
2.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복구 시 국고보조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95

제 2 장 수입법안

I. 소득과세 분야 • 101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총급여 기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 101
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 105
3.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 108
4.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112
5. 자녀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116
6.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119

II. 법인과세 분야 • 123

1. 법인세율 조정(인상 · 인하): 「법인세법」 ····· 123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 ·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127
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131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135
5.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139
6. 설비투자세액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143

III. 재산과세 분야 • 147

1.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법」 ····· 147
2. 상속·증여세율 최고구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51
3. 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54
4. 일감몰아주기 과세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57

IV. 소비과세 분야 • 161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 161
2. 택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 165
3.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 168

V. 기타 분야 • 171

1.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 171
2.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174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1 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 분야

1. 국민연금 산업재해크레딧 신설: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액 계산 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의 50%로 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인정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01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실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가입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여 주는 제도

○ 출산크레딧[1], 군복무크레딧[2]은 연금 수급시점에 일정요건 충족시 법에서 정한 기간을 추가 산입하여 연금급여액 계산

○ 실업크레딧[3]은 실업발생 시점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mileend@nabo.go.kr)

1)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한다.
2)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3) 실업크레딧 대상자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만 해당되고, 실업크레딧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보험료의 75%로, 국민연금기금 25%,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로 구성된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4] 수급자도 수급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므로, 유사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발의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등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휴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므로, 실업크레딧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2017. 4. 14.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은 유사 제도인 실업크레딧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연금보험료 지원 7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5%)
- 수급자 본인 부담 25%

4)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휴업급여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향후 연금액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상당기간 이후에 발생하므로 추계에서 제외

○ 시나리오는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1), 인정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2)로 구성[5]

2) 추계 방법

○ 휴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 수에 지원기간, 인정소득, 보험료율, 지원율을 곱하여 산출

추가재정소요 =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 수 × 지원기간 × 인정소득 × 9% (보험료율) × 지원율

- 휴업급여 지급 대상자 수: 성별, 지급기간별, 인정소득 수준별 지급대상자 수를 추계하며, 2013~2015년 평균증감율이 2018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지원기간: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은 9개월, 12개월 이상은 12개월 동안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
- 인정소득: 성별, 지급기간별로 인정소득을 산정하는데, 인정소득은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
  (시나리오1) 최저임금[6]의 50%
  (시나리오2) 최저임금의 100%

5) 휴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하려면 휴업급여 수급자의 소득수준을 정해야 하므로, 시나리오는 휴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인정소득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유사제도인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상한선은 최저임금액의 절반 수준('18년기준 70만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휴업급여도 이를 준용하여 최저수준은 최저임금의 50%, 최고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정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21호]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6)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이며, 추계기간동안 2013~2018년 평균상승률 9.15%를 적용하여 추계한다.

- 지원율: 실업크레딧의 사례를 준용하여 지원율 75%(국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5%)

3) 추가재정소요

○ 휴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 준	지원 대상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계산 위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의 50%로 적용	11만 6천명	508억원
시나리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계산 위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으로 적용	11만 6천명	1,016억원

주: 수급자 수는 추계기간 말(2023년) 수급자 수

- (시나리오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계산 위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의 50%로 할 경우 연평균 50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 계산 위한 인정소득을 최저임금액으로 할 경우 연평균 1,01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유형	구체적 내용	지원		예산 (2018년)
		지원방식	적용 소득	
출산 크레딧	·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	연금수급시, 연금액에 가입기간 반영	A값 (218만원)	1.6억원 (약 1,370명)
군복무 크레딧	· 2008년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연금수급시, 가입기간 (6개월) 반영	A값의 50% (109만원)	미발생 (수급연령 미도래)
실업 크레딧	· 2016년 8월부터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받는 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 추가 인정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 지원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상한액은 최저임금 약 50% 수준)	606억원 (83.5만명)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법」

- 201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할 경우(시나리오1) 국민연금기금은 연평균(2018~2060년) 10조 1,323억원(불변가격)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 뒤 고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2018~2060년) 20조 2,647억원의(불변가격)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1]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씩 감소하여 2028년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되었으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다시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씩 하락하여 2018년 현재 45%가 되었으며, 2028년 이후는 40%로 고정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5~30% 수준으로 낮아짐

○ 2016년 기준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4년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25년

○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을 45%, 50%까지 높이는 개정안 발의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mileend@nabo.go.kr)

1)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소득대체율 상향이 국민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45%, 50%로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2017. 5. 2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유지
	정춘숙의원	2017. 9. 1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2028년까지 50%로 상향 후 유지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종별(사업장, 지역)간 이동률, 징수율, 납부예외자비율, 가입기간 등의 제도변수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건복지부)에서 적용한 변수 사용

○ 인구는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전망을 적용하며, 명목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2015년 장기전망) 적용

○ 연금급여액의 변화는 연금 수급시점에 발생하므로, 추계기간은 소득 대체율 상향 효과 분석을 위해 2018~2060년까지로 함

○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기간이 장기이므로 불변가격[2]으로 제시

2) 불변가격은 경상가격을 물가상승률로 할인한 것으로서, 연금 급여액은 보건복지부(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가 장기재정전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변가격으로 제시한다.

○ 시나리오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 이후 45%로 유지(시나리오1), 소득 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매년 0.5%씩 상승시켜 2028년 이후 50%로 유지(시나리오2)로 구성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소득대체율 45%(시나리오1), 50% (시나리오2)에 따른 국민연금급여 추계액에서 현행 소득대체율에 따른 국민연금급여 추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 국민연금급여 추계액은 연금급여 유형별 수급자 수에 각 유형별 연금급여액을 곱하여 산출

국민연금급여 추계액= 연금급여유형별 수급자 수 × 유형별 연금급여액

-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 추계: 가입자의 성별, 종별(사업장, 지역 등), 연령, 장애율, 사망률, 종별 이동률, 연금가입률 등 각종 변수 적용하여 추계
- 급여유형별 연금급여액 추계: 20년 가입기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유형별 지급률 곱하여 산정

▣ 20년 가입기준 기본연금액(연간) 산식

○ 기본연금액 = 급여계수 × (A + B)

- 급여계수: 소득대체율을 나타내는 계수
-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급여계수와 소득대체율 관계]

		'08~'17년	'18~'28년	'28년 이후
현행	급여계수 (소득대체율)	1.5 → 1.2 (매년 0.015씩 감소) (50% → 40%)		1.2 (40%)
시나리오 1	급여계수 (소득대체율)	1.5 → 1.35 (50% → 45%)	1.35 (45%)	
시나리오 2	급여계수 (소득대체율)	1.5 → 1.365 (50%→45.5%)	1.35 → 1.5 (45%→50%)	1.5 (50%)

- (현행)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낮아지므로 급여계수는 2028년 이후 1.2 적용
- (시나리오1)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므로 급여계수는 2018년 이후 1.35 적용
- (시나리오2) 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하므로 급여계수는 2028년부터 1.5 적용

3) 추가재정소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에 비해 상향하는데 따른 2018~2060년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8~2060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 준	수급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소득대체율 2018년 이후 45% 유지	1,358만 2천명	10조 1,323억원
시나리오 2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50%로 상향	1,358만 2천명	20조 2,647억원

주: 1.수급자 수는 추계기간 말(2060년) 수급자 수
2.추가재정소요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

- (시나리오1) 소득대체율을 2018년 이후 45%로 고정할 경우 연평균 10조 1,323억원(불변가격)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2028년 50%까지 상향한 뒤 50%로 유지할 경우 연평균 20조 2,647억원(불변가격)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아동수당 도입: 「아동수당법」 등

-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2인 가족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로 적용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7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되 전체 가구로 적용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3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출산 순위별로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지급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5.5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1)]

○ 아동수당의 재원조달 방식은 국가, 고용주, 국가와 고용주 분담 등으로 구분

❑ 최근 경제적 ·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출산 포기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개정안(0~12세, 월 10~30만원 지급 등) 발의[2)]

○ 아동수당은 1926년 세계 최초 뉴질랜드에서 도입, 프랑스(1932년), 영국·캐나다(1945년), 일본(1971년) 등 전세계 90여개 국가에서 도입

이은미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eunmee@nabo.go.kr)

1) 아동수당을 주로 child allowance, children's allowance라고 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국한하여 제공하는 이스라엘, 일본, 그리스의 경우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으로 부르기도 하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child allowance와 family allowance를 구분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2) 2인 가족 기준 소득수준 90%이하 가구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이 제356회제9차 본회의(2018. 2. 28.)를 통과하였다.

❑ 아동수당 도입 시, 지급대상 가구 소득과 아동 연령 기준, 지급액 등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 분석 필요[3)]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19~2023년 연평균 재정소요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의원	2016. 10. 7.	0~2세는 월 10만원, 3~5세는 월 20만원, 6~12세는 월 30만원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 셋째는 전체 지원	14조 8,784억원
	김부겸의원	2017.3. 31	출산순위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 (아동수당위원회 심의·의결)	8조 9,605억원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후 40만원 가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6. 12. 8.	6세 이하 아동 첫째 월 10만원, 둘째 월 20만원, 셋째 월 30만원 지급	5조 4,807억원
	김광수의원	2017. 1. 11.	12세 이하 아동 월 30만원 지급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16조 4,628억원
	김승희의원	2017. 6. 5.	6~17세 아동 월 15만원 지급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미만인 가구	4조 8,879억원

3) 아동의 정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현재 발의된 법률안의 연령이 0~1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연령구간만 분석대상으로 한다.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2019~2023년 연평균 재정소요
	윤소하의원	2017. 6. 12.	0~11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6조 2,083억원
	전혜숙의원	2017. 7. 19.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2조 9,623억원
「아동수당 법률안」	정부	2017. 9. 28.	0~5세 아동 월 10만원 지급	2조 9,567억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연령기준 및 아동수당 월 지급금액에 따라 시나리오(1~5)로 제시

○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분포는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

○ 아동의 연령별 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2015년) 활용

○ 출산순위별 대상자는 통계청의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연령별 지급 대상자수 × 소득기준 × 월 지급금액 × 12월

- 지급대상자의 연령은 시나리오에 따라 0~12세, 월 지급금액은 시나리오에 따라 월 10~30만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배 또는 1.5배 적용

3) 추가재정소요

○ 아동수당 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4)]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연령	지급액	소득		
시나리오 1	0~5세	월 10만원	2인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	233만명('19년) ~228만명('23년)	2조 7,401억원*
시나리오 2			소득기준 없음	252만명('19년) ~243만명('23년)	2조 9,623억원
시나리오 3	0~6세	첫째:월10만원 둘째:월20만원 셋째:월30만원	소득기준 없음	298만명('19년) ~294만명('23년)	5조 4,807억원
시나리오 4	0~12세	0~2:월10만원 3~5:월20만원 6~12:월30만원	기준중위소득 2배 이하 (단, 셋째는 소득기준 적용안함)	539만명('19년) ~520만명('23년)	14조 8,784억원
시나리오 5	0~12세	월30만원	기준중위소득 1.5배 이하	466만명('19년) ~449만명('23년)	16조 4,628억원

주: * 2018년 예산 기준

4) 각 시나리오별 비용추계는 2016년 말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여 재계산함에 따라 일부 법률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률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재정소요액이 다를 수 있다.

- (시나리오1) 0~5세에 대해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각 연령별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2.3백만명에 대해 연평균 2.7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0~5세에 대해 각 연령별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2.5백만명에 대해 연평균 3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0~6세에 대해 출산 순위에 따라 월 10~30만원을 지급할 경우, 약 3백만명에 대해 연평균 5.5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4) 0~12세에 대해 각 연령별로 월 10~3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의 2배 이하(93.2%)인 가구에게 지급할 경우, 약 5백만명에 대해 연평균 15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5) 0~12세에 대해 월 3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 1.5배 이하(81.2%)인 가구에게 지급할 경우, 약 4.5백만명에 대해 연평균 16.5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아동수당 제도 비교

○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도입

○ 최근 재정난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소득별 지원금 차등화

〈아동수당 제도 비교〉

	영국	프랑스	일본
시작연도	1945년	1932년	1972년
지급연령	0~16세	0~20세	0~15세
월 지급	· 연소득 5만 파운드 이하 15만원 · 둘째부터 10만원씩 추가 연소득 6만 파운드 이상 제외	· 두자녀: 16만원 · 세자녀: 36만원 · 14세이상: 8만원 추가 · 월소득 983만원 초과시 4분의 1 · 737만원 초과시 2분의1 지급	· 0~2세: 16만원 · 3세~취학전: 11만원 · 셋째이상: 16만원 · 중학생: 11만원 · 4인가구 1억원 이상은 2분의1
지급방법	2013년부터 소득별 차등화	2015년부터 소득별 차등화	2012년부터 소득별 차등화
재원	국가(세금)	국가(세금)	중앙정부:지자체= 2:1부담

4. 장애인활동인력 급여 인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인력에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액의 120%(시나리오1), 130%(시나리오2), 150%(시나리오3)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각각 연평균 2,318억원, 2,955억원, 4,22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하여, 2010년 1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의 급여수준을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이은미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eunmee@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2017. 1. 31.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상향 조정
	남인순의원	2017. 1. 31.	활동지원급여 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 임금액(상한율 120%, 130%, 150%)에 현 제도 유지 시 활동지원 보수액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를 시나리오(1~3)로 제시

○ 활동지원급여의 단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월평균급여액 단가 예산 기준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상한율 × 평균 제공인력 × 월평균 근무시간 × 12개월] - [2016년 시간당 평균보수액 ×시간당 단가 평균증가율 × 평균 제공인력 × 월평균 근무시간 × 12개월]

- 2018년 최저임금액 평균증가율은 최근 5년 증가율 9.15%, 평균 제공인력은 2016년 연평균 제공인력인 43,909명,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연평균 근무시간인 122.54시간 적용[1)]

3) 추가재정소요

○ 활동보조급여를 최저임금액의 120%, 130%, 150%로 적용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2,318억원
시나리오 2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2,955억원
시나리오 3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	4,229억원

- (시나리오1) 활동보조급여를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을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연평균 2,31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활동보조급여를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연평균 2,95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활동보조급여를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지급할 경우 연평균 4,22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1) 각 시나리오별 비용추계는 2016년 기준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출산수당 지급: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출산시 1회 1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95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5,9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수당을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 현재 출산지원정책은 임신 · 출산 진료비, 난임부부 시술비용,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중앙정부),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지원[1)]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2017. 1. 11.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출산수당 지급

이은미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 eunmee@nabo.go.kr)

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급 사업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18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사례집」, 보건복지부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전체 출산아에 대하여 출산휴가 기간(3개월) 동안 출산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시나리오로 제시

○ 출산수당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평균액이 아동 1인당 약 1백만원 수준임을 고려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출산아 수 × 분만횟수 × 지원기간 × 출산수당

- 출산아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0세 인구수를 적용하며, 분만횟수는 다태아 등을 고려하여 97%를 적용, 지원기간 및 출산수당은 출산 시 1회 100만원 지급과 출산 휴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

3) 추가재정소요

○ 출산수당 지급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출산 시 1회 100만원 지급	3,958억원
시나리오 2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지급	5,936억원

- (시나리오1) 출산 시 1회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3,958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평균 5,93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6.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모든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임산부 중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억 1,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가 등이 노외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개정안 발의

○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중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임산부는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

○ 임산부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을 설치

❑ 노외공영주차장 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임산부에게 발급되는 주차표지의 발급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2017. 8. 18.	'임산부' 및 '영유아동승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박주민의원	2017. 9. 5.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신설되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으로 하여 임산부전용 주차면 및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 수 대비 임산부전용 주차면 수 비중을 3.5%로 가정[1)]

○ 임신을 한 여성 전부가 주차표지를 1매씩 발급받는 경우(시나리오1)와 임신을 한 여성 중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 전부가 주차표지를 1매씩 발급받는 경우(시나리오2)로 나누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비용

-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주차면 설치 수 × 1면당 설치단가) + (표지판 설치 수 × 1개당 설치단가)

1)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2~4%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공영주차장(2014년 기준 노상, 노외 포함)의 총 주차면 수(1,273,181면) 대비 장애인전용주차면 수(44,665면) 비중이 3.5%인 점을 고려하여 임산부전용 주차면 수 비중을 3.5%로 가정한다.

-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비용= 주차표지 발급 수 × 1매당 발급단가
  이 때, 주차면 1면당 설치단가는 3만원, 표지판 1개당 설치단가는 1만원, 주차표지 발급(제작)단가는 1매당 1,021원(2017년 기준)

3) 추가재정소요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모든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42만 9,150명	4억 8,900만원
시나리오 2	임산부 중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8만 4,396명	1억 1,000만원

- (시나리오1) 국가 등이 노외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모든 임산부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연평균 4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국가 등이 노외공영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임산부 중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연평균 1억 1,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7.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준연금액 기준조정: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7조 2,97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5조 9,79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만 65세 이상 노인 50%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3조 9,9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된 제도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2014년 월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시작하여 2017년 월 최대 206,050원 지급

❑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6회제9차 본회의(2018.2.28.)에서 통과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7. 8. 2.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지급
	윤소하의원	2017. 7. 19.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
	김성식의원	2017. 8. 30.	만 65세 이상 노인 50%에게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50~70%는 현행 유지)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65세 이상 연령별 인구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

○ 추계기간동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 현행기준 유지 시 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 65세 이상 인구 × 대상자 비율 × 월 기초연금 × 12월
- 현행기준 유지 시 재정소요= 65세 이상 인구 × 70% × 월 기초연금 × 12월

3) 추가재정소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준연금액 기준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대상자	지급액		
시나리오 1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25만원('18년~'20년) 30만원('21년~)	521만명('19년)~ 640만명('23년)	7조 2,976억원
시나리오 2	65세 이상 노인 전체	20만원	745만명('19년)~ 914만명('23년)	5조 9,796억원
시나리오 3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50%	30만원	372만명('19년)~ 457만명('23년)	3조 9,943억원
시나리오 4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25만원	521만명('19년)~ 640만명('23년)	6조 1,230억원

- (시나리오1)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 25만원, 2021년에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7조 2,97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연평균 5조 9,79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만 65세 이상 노인 50%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3조 9,94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연평균 6조 1,23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한국의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자산 수준 이하 노인에게 기여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로, 유사제도 운영국가로는 호주가 있음

○ 호주는 소득·자산 조사를 통하여 일정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2015년 수급률 69%)

8.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 · 공립화: 「영유아보육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841억 7,500만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601억 2,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 국 · 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부모 부담이 적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수 부모가 자녀의 입소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그 수요에 비하여 국 · 공립 어린이집 수가 부족한 실정

○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국 · 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 · 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개정안 발의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0, hsyoo@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2017. 12. 14.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민공동시설의 기초 공사비를 부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5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2)로 나누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용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용= 어린이집 1개소당 설치비용 × 신규 건설 공동주택 수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용= 국·공립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1개소 당 추가 지원금 × 신규 건설 공동주택 수

3) 추가재정소요

○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의 국·공립화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 공동주택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474개	841억 7,500만원
시나리오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343개	601억 2,400만원

- (시나리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841억 7,5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평균 601억 2,4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주요국의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시설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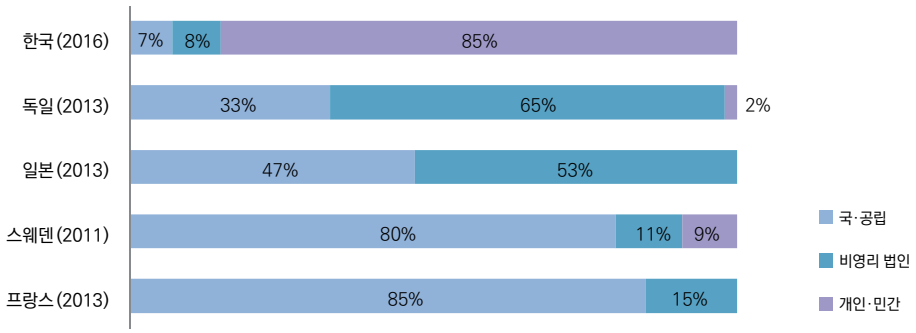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비율 상향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 치매 환자를 추가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076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 및 연평균 415억원의 정부부담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 감경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64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 및 연평균 62억원의 정부부담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보험[2)]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서비스의 경우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의 50%를 감경

김윤희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8, younhee@nabo.go.kr)

1)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 감경비율을 조정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012262)이 제356회제9차 본회의(2018.2.28.)를 통과하였다.

2) 재가급여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서비스에는 시설입소가 있다.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 치매환자 추가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현황 및 재원부담 주체(2016년 기준)〉

	전체	일반	감경 대상자			면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소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수(명)	520,043	364,400	6,208	121,488	127,696	85,332
본인 부담률 (%)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7.5 시설급여 10			전액 면제
자격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원 부담 주체	-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수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부담	노인장기 요양보험 보험료 수입	-	지방자치단체 전부부담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2017. 11. 21.	감경대상자에 치매환자 추가
	전혜숙의원	2017. 10. 23.	감경대상자의 감경비율 조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의 경우 국가 부담분(20%) 만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 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만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증가 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추계

2) 추계 방법

○ 감경대상자 증가

- 치매 환자 일반 장기요양수급자 수에 1인당 연평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공단부담률(=100%-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 본인부담률(시설 20%, 재가 15%)과 제도 변경 후 본인부담률(10%, 7.5%) 각각 적용

○ 감경비율 조정

- 감경대상자(127,696명)를 차상위계층과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자 수 추계 후 1인당 연평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공단부담률 (=100%-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현행제도 유지 시 본인부담률(시설 10%, 재가 7.5%)과 제도 변경 후 본인 부담률(8%, 6%) 각각 적용

3) 추가재정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대상자 수	연평균 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감경대상자	치매 환자 추가		265,878명	2,076억원	415억원 (국비)
감경비율	50% → 60% 상향 조정	차상위계층	186,118명	253억원	51억원 (국비)
		타법 의료급여	9,654명	11억원	11억원 (국비 8, 지방비 3)
		합 계	195,772명	264억원	62억원 (국비 59, 지방비 3)

- (시나리오1) 치매 환자를 감경대상자에 추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는 연평균 2,076억원(총 1조 382억원),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415억원(총 2,076억원) 예상
- (시나리오2)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 감경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추가 급여비는 연평균 264억원(총 1,319억원),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62억원(총 308억원) 예상

10.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약사법」

- 심야약국(8시간 운영)에 시간당 3만원, 공휴일 약국에 일 15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77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심야약국(3시간 운영)에 시간당 4만 5천원, 공휴일 약국에 일 30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80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심야약국(3시간 운영)에 시간당 3만원, 공휴일 약국에 일 15만원을 지급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133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2018년 3월 현재 4개 시 · 도(경기도, 대구, 대전, 제주도)에서 자율적으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

○ 경기도는 6개 약국(22시~01시), 대구는 심야약국 1개소(22시~06시) 및 365 약국 9개소(매일 09~20시), 대전은 2개 약국(22시~24시), 제주도는 12개 약국(읍면 20~23시, 동지역 22~24시) 각각 운영

❑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2017. 9. 1.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운영

김윤희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8, younhee@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공심야약국을 심야시간 운영 약국과 공휴일 운영 약국으로 구분하여 운영

○ 공공심야약국은 기초지방자치단체(226개 지역)와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37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263개소로 가정

○ 추계기간 중 지원단가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있고 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총 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공공심야약국 수에 1개소당 지원비(심야약국 운영비와 공휴일약국 운영비의 합)를 곱하여 추계하되, 1개소당 지원비는 운영시간, 시간당 지원 금액 등에 따라 시나리오 구성

3) 추가재정소요

○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 지원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심야약국 운영시간	심야약국 시간당 지원단가	공휴일약국 일 지원단가	
시나리오 1	8시간(22~06시)	30,000원	150,000원	277억원
시나리오 2	3시간(22~01시)	45,000원	300,000원	180억원
시나리오 3	3시간(22~01시)	30,000원	150,000원	133억원

- (시나리오1) 심야약국을 8시간 운영하되 시간당 지원단가를 3만원, 공휴일 약국 일 지원단가를 1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277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심야약국을 8시간 운영하되 시간당 지원단가를 45천원, 공휴일 약국 일 지원단가를 3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180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심야약국을 3시간 운영하되 시간당 지원단가를 3만원, 공휴일 약국 일 지원단가를 1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평균 133억원의 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 2018년 3월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주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있음

시 · 도명	제주	대구	경기	대전
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 심야약국 운영사업	대구광역시 공공(심야 · 365) 약국 운영사업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	대전광역시 심야응급약국
사업시작연도	2012.~현재	2013.8.~현재	2015.10.~현재	2018.1.~현재
참여약국 수	12개 약국	10개 약국 (심야약국 1개소, 365약국 9개소)	6개 약국	2개 약국
운영시간	읍면지역 (20시~23시) 동지역 (22시~24시)	심야약국 (22시~06시) 365약국 (09~20시)	매일 22시~01시	매일 22시~01시

Ⅱ 산업 · 농업 · 국토 · 교통 분야

1.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추계기간 동안 대형화재 미발생으로 가정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사업결산잉여금 등으로 조성가능 할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 추계기간 동안 특정연도에 대형화재 1회 발생으로 가정 시, 피해규모를 2005년 대구서문시장 화재(189억원 피해)로 볼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6억 6,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피해액 규모를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469억원 피해)로 볼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5억 8,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2018년 예산 10억 5,000만원)[1]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수행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1)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공제 시스템 유지·보수·홍보(3억원) 및 운영(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사업에 손실보전준비금 조성을 위한 출연(또는 보조)을 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

- 화재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손해보상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손실보전준비금은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공제료,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	김태년의원	2017. 2. 8.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 조성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화재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공제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손실보전준비금 조성 목적의 출연금 추계

-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의 점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화재가 '통상의 화재'여서 공제금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화재공제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등으로 공제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 미발생

2) 정부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사업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출연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 대해 공제료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2017.2.8. 발의)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2017.8.28.) 되었고, 2018.3.1.기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 다만, 추계기간 동안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공제금 지출이 매우 큰 경우는 대형화재의 피해액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로 구분
- 대형화재[3]는 추계기간(2019~2023) 동안 특정연도에 1회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추가재정소요는 각 연도의 수지차의 평균금액으로 산출

2) 추계 방법

○ 손실보전준비금은 화재공제 가입자(점포)가 납부하는 공제료 수입에서 화재 발생에 따른 공제금 지출의 차이(수지차)의 평균금액으로 추계

○ 가입점포 수의 경우, 「2015년 전통시장 ·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서 "민간 화재보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점포(2015년 기준 53,011개)[4] 기준

- 가입자 수 목표는 추계기간의 마지막 해에 달성되는 것으로 하며, 매년 균등하게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 상인 등이 부담하는 공제료 수준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가입조건이 다양하므로 최대 보상 상품(6,000만원)에 모두 가입하는 것으로 하며,[5] 공제료는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6]

---

3) 대형화재란, 인명피해 기준으로는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인 화재를 의미하며, 재산피해 기준으로는 그 피해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말한다(「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제1항제1호 참고).

4) 「2015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5.) 참고

5) 실제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의 점포가 선택한 상품이 최대 보상 상품이 아닌 경우 화재공제사업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손실보전준비금은 증가할 수 있다.

6) 자기점포의 경우 A급 건물구조의 점포가 2,000만원(건물 1,000만원, 동산 1,000만원) 보상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료는 연 66,000원, 6,000만원(건물 3,000만원, 동산 3,000만원) 보상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공제료는 연 198,000원이며, 화재에 취약한 B급 건물구조의 점포는 같은 보상 상품의 공제료가 각각 101,500원, 304,500원으로 증가한다. A급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기둥) 슬라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기둥) 불연재료지붕의 구조를 의미하고, B급 건물구조는 A급을 제외한 기타건물구조를 말한다.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 참고

3) 추가재정소요

○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자금의 조성을 지원하는데 따른 2019~2023년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대형화재 발생 (2005년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 기준)	16억 6,700만원
시나리오 2	대형화재 발생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 피해 기준)	45억 8,500만원

- (시나리오1) 추계기간 동안 특정연도에 대형화재가 1회 발생하는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사업이 입게 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 이때 피해액 기준을 2005년 대구서문시장 화재(189억원 피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평균 16억 6,700만원(총 83억 3,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시나리오1에서 피해액 기준을 2016년 대구서문시장 화재(469억원 피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연평균 45억 8,500만원(총 229억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만을 반영 시(시나리오1) 연평균 8,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전부와 민영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일부 포함 시(시나리오2) 연평균 9억 8,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개정안 발의

○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1]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2017. 6. 9.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전용주차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현황[2)]을 고려하여 전체 주차면수(2015년말 기준 2,033만면)의 1%로 가정

- 추계기간 첫 해에는 해당연도 신규 주차면수뿐 아니라 전년도말 기준 전체 주차면수의 1%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공영 및 민영주차장 모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민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

- 민영주차장에 대해 국가 등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1)와 민영주차장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중 50%를 국가 등이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2) 2016년 기준으로 자동차(승용차+승합차) 등록대수는 1,823만대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수는 25만대이다(보급률 1.37%).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대수는 연도별 보급대수 자료(환경부)를 취합한 것으로 폐차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 추계 방법

○ 비용추계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대상 주차면수에 도색비용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은 전용주차구역을 다른 주차구역과 구분하여 표시하기 위한 도색비용으로 하며, 현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비용(3만원/주차면) 반영

3) 추가재정소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 주차장 면 총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공영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만을 반영하는 경우	13,362	8,000만원
시나리오 2	공영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 전부와 민영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314,750	9억 8,400만원

- (시나리오1)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 연평균 8,000만원(총 4억 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민영주차장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중 50%를 국가 등이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9억 8,400만원(총 49억 2,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0억 6,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87억 6,900만원, 최소 1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38억 6,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이 작업 중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1)]

○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2016년 기준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55.5%, 어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45%

❑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정혜윤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46, chy@nabo.go.kr)

1)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율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2017.5.23. 발의)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경영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어(2017.9.21.), 2017년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다.

○ 현행법상 국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은 0~49%까지 다양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2017. 5. 23.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추계기간의 보험 계약자는 최근 3년간의 계약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

-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5년간 연평균 0.6% 증가, 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감소 추세에 있어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20%를 지원하는 것을 시나리오1로, 최소 25% 및 15%를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각각 시나리오2와 3으로 추계

2) 추계 방법

○ 2016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계약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보험료 지원율이 시나리오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계산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지원율이 20%임을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 현행 지원율이 20%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추계

3) 추가재정소요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	60억 6,600만원
시나리오 2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를 지원	87억 6,900만원
시나리오 3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15%를 지원	38억 8,700만원

- (시나리오1)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60억 6,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87억 6,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15%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38억 8,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4.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율 상향 조정: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6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국비 연평균 74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지방비 연평균 17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3) 지방비 연평균 지방비 26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작물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보험

○ 보험 종류별 가입률(도입년도)은 가축재해보험 92.4%(1997년), 농작물재해보험은 27.5%(2001년), 어업재해보험은 37.8%(2008년)

○ 농어업재해보험은 가입대상을 품목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농업분야 52개 품목, 어업분야 37개 품목을 운영 중

❑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을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

○ 현행법에서 국가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

정혜윤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46, chy@nabo.go.kr)

○ 현재 국가의 지원율은 50%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은 0~43.9%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2017. 7. 13.	정부는 보험료의 60%를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20%를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추계기간의 농어업재해보험 계약자는 최근 3년간의 계약자 증가율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12.9%, 어업재해보험의 경우 17.3%를 적용하고,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목표치인 90%대를 유지하고 있어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음

○ 국가가 최소 60%를 지원하는 것을 시나리오1로, 국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20% 지원하는 것을 시나리오2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25% 지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3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2016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계약 현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보험료 지원율이 시나리오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계산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지원율이 20%임을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 현행 지원율이 20%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없는 것으로 추계

3) 추가재정소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따른 2019 ~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60% 지원	국 비: 연평균 749억원
시나리오 2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 지원	지방비: 연평균 173억원
시나리오 3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 지원	지방비: 연평균 265억원

- (시나리오1) 국가가 보험료의 최소 60%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74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국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0%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17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국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최소 25%를 지원하는 경우, 연평균 26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5.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협의체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9억 5,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7억 2,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 매입한 주택(30년 이상 임대목적), 또는 건설한 주택(50년 이상 임대목적)

○ 2016년 12월 말 기준 1,136단지로 조사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입주자, 행정기관,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과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에 비용을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성선애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0, sasung@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2017. 3. 29.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비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김성태의원	2017. 7. 3.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협의체의 운영비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의 운영비용 지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단지 수와 지원금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연간 추가재정소요 = 협의체 운영비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 협의체 운영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수 × 단지 당 지원금액(연 20만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수 × 단지 당 지원금액(연 240만원)

3) 추가재정소요

○ 공공임대주택의 협의체 및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지원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 단지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및 협의체 운영비 지원	1,136	29억 5,400만원
시나리오 2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1,136	27억 2,600만원

- (시나리오1) 협의체 운영비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를 모두 지급할 경우, 1,136단지에 대해 연평균 29억 5,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만을 지급할 경우, 1,136단지에 대해 연평균 27억 2,6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III 교육 · 문화 · 여성 · 가족 분야

1.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추가재정소요
-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1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0억 6,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한부모가족 아동은 부모의 미혼, 이혼, 사별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음

❑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49조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는 지원되나 의료비는 지원 제외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2, cecil@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2017. 7. 18.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시나리오1)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지원' 사업[1)]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미포함

○ (시나리오2)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수준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1) 추가재정소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시나리오2) 추가재정소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차상위계층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아동 × 1인당 연간본인부담금

1)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증가분 등을 국고지원하는 사업(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세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함)이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sum_{i=1}^{2}$(지원대상아동i × 1인당 연간본인부담금i × 지원비율) 이때, i=1은 0~12세, i=2는 13~17세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아동 × 1인당 연간본인부담금 중 일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0~12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65,023명(2016년 기준)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30~40%에 해당하는 29,556명(65,023×10%/22%[2])으로 적용하며
- 해당연령의 의료급여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연간 20,909원(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13~17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0~12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65,023명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50~52%에 속하는 5,911명(65,023×2%/22%)을 적용하며
- 해당 연령의 건강보험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연간 187,593원(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의 본인부담차액 평균 비율(27%)을 곱한 값을 지원단가로 산출
- 13~17세: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 지원대상자 중 중학생 ·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30,573명(2016년 기준)으로 추정하며, 지원단가는 연간 120,520원(2016년 기준)에서 '차상위 계층지원' 사업의 본인부담차액 평균 비율(27%)을 곱한 값으로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상한 52%에서 기준 중위소득 하한 30%를 차감한 값이다.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 0~12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65,023명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50%에 해당하는 29,556명으로 가정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연간 20,909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13~17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나리오에 따른 지원〉

기준중위소득	지원급여(사업)	현행 의료비 지원 현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0~12세	13~17세	0~12세	13~17세	0~12세	13~17세
30~40%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없음	-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
40~50%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본인 부담금 일부지원	-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
50~52%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없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3) 추가재정소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의료비 지원에 따른 2019 ~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없음)	11만명('19년)~ 13만명('23년)	31억 8,900만원
시나리오 2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포함)	14만명('19년)~ 16만명('23년)	40억 6,900만원

- (시나리오1)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연평균 31억 8,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의료급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시 연평균 40억 6,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 지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가정하여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1억 2,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가정하여 국가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68억 3,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매장문화재 발견이 많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발굴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공사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 발의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소규모의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시설, 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

❑ 재정수반요인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 대한 발굴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때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2, cecil@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2017. 7. 10.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 대하여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 국가 지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발굴 건수 상위 5개 지역[1]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 전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건수 1,600개(2016년)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민간시행자는 252건으로, 15.8%(252건÷1,600건)의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발굴 건수 상위 10개 지역[2]으로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2)

-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지 않은 민간시행자는 403건, 25.2%(403건÷1,600건)의 비중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 미지원건수 비중(민간사업시행자 부담건수 비중) × 건당 발굴비용

1) 경북 경주시, 서울 종로구, 충남 부여군,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2) 경북 경주시, 서울 종로구, 충남 부여군,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하남시, 울산 울주군, 서울 중구,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 (시나리오1)

- 지원대상: 전체 매장문화재 발굴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율 10.7%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 건수(이하 "미지원 건수") 비중 15.8%를 곱하여 추정
- 지원단가: 미지원건수 252건의 평균 발굴비용 1,000만원에 물가상승율 적용

○ (시나리오2)

- 지원대상: 전체 매장문화재 발굴건수에 미지원 건수 비중 25.2%를 곱하여 추정
- 지원단가: 미지원건수 403건의 평균 발굴비용 1,190만원에 물가상승율 적용

3) 추가재정소요

○ 매장문화재 발굴경비 지원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수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상위 5개 지역	342('19년)~513건('23년)	41억 2,100만원
시나리오 2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상위 10개 지역	546('19년)~820건('23년)	83억 800만원

- (시나리오1)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상위 5개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41억 2,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매장문화재 발굴건수 상위 10개 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연평균 83억 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고교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법」 등

- 고등학교까지의 급식운영비(보호자 부담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2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급식운영비(보호자부담분)와 식품비(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조 7,1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급식비) 중 급식운영비와 식품비에 대하여 보호자가 상당한 비용을 부담(2016년 기준 각각 21.6%, 35.8%)

○ 시설 ·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가능

○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가능

○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가능

경비종류	원칙	예외
시설 · 설비비	설립 · 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급식운영비	설립 · 경영자	보호자
식품비	보호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손명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9, tundra@assembly.go.kr)

❑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회찬의원	2016. 7. 7.	급식운영비, 식품비 전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 부담
	박광온의원	2016. 7. 22.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김경수의원	2016. 8. 16.	의무교육대상자의 급식운영비,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조승래의원	2016. 10. 25.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2017. 7. 27.	급식비를 포함하여 중등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초 · 중 · 고교 학생 전체에게 학교 설립 · 경영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급식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시나리오1),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시나리오2)으로 구분

○ 각 시나리오별로 추계기간동안 2016년의 무상급식 비율과 부담주체별 급식운영비와 식품비에 대한 부담비율을 유지하고, 초 · 중 · 고교 학생 전체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전제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1) 추가재정소요= 급식운영비 × 보호자부담비율

○ (시나리오2) 추가재정소요=〔급식운영비 + 식품비(식품비단가 × 학생수)〕× 보호자부담비율

○ 급식운영비 총액은 추계기간동안 2011년~2016년 추세분석에 따른 전년 대비 급식운영비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고, 식품비는 학생 수를 추계하여 식품비 단가 및 보호자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출

3) 추가재정소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운영비 또는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모두 부담하는 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급식운영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5,234억원
시나리오 2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1조 7,134억원

- (시나리오1) 급식운영비의 국가 등 부담 시 연평균 5,2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급식운영비와 식품비 모두를 부담하는 경우 연평균 1조 7,13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Ⅳ 환경 · 노동 분야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고용보험법」

-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당연가입 대상으로 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19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개인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고용보험은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 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반면,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 대상

○ 고용보험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계정,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계정 등 총 4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1.3% (근로자와 사업주 반씩 부담) 부과하고,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1~7등급 기준보수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실업급여 보험료 2%를 납부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액 일 6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일액의 90%)를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가입당시 선택한 1~7등급 기준보수의 50%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180일간 지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 위험에 노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산재보험에만 임의가입 대상이며, 가입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2016. 9. 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당연가입
	박광온의원	2018. 2.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시 보험료 수입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추계대상에서 제외

○ 구직급여 수급자 수: 해당 근로자 피보험자 수에 최근 3년간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 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평균비중(9.9%)을 적용하여 산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보험자 수

- 당연가입: 최근 2년간 취업자 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자 수 평균비중(1.8%)을 곱하여 산출

- 임의가입: 입직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비중(11.7%)을 다시 곱하여 산출

○ 2020년 수급자 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2020년에는 전년도 이월자가 없으므로, 2020년 수급자 수는 최근 4년간 전년도 이월자 수 비중(21%)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를 차감

○ 급여일액: 현행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월 기준보수를 일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50%로 설정

- 기준보수액은 2017년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기준보수별 대상자 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 수급일수: 2015~2016년간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별 평균 급여일수(1년 이상~3년 미만 72일, 3년 이상~5년 미만 82일) 적용

2) 추계 방법

○ 구직급여 추가재정소요 = 수급자 수 × 평균 급여일액 × 평균 수급일수

- 피보험기간별 수급자 수 = 취업자 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자 수 평균 비중 ×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비중 × 자영업자 피보험기간별 수급자 수 비중

※ 추계기간인 2019~2023년 중 2019년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인 자가 없어 추가재정소요가 없고, 2020~2021년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가 100%, 2022~2023년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36.9%,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63.1%

3) 추가재정소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또는 임의가입에 따른 2020~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20~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당연가입	1,632억원
시나리오 2	임의가입(적용제외 허용)	191억원

- (시나리오1) 당연가입 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 수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연간 피보험자 수는 50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연간 5만명 수준으로 예상) 4년간 연평균 약 1,63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피보험자 수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임의가입을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같이 피보험자 수가 연간 6만명, 구직급여 수급자 수도 약 6천명 수준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 4년간 연평균 약 191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고용보험법」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9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액을 월 150만원, 하한액을 월 80만원으로 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40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하한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80%로 각각 정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5,41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급여를 지급

○ 수급자격은 육아휴직 신청일 이전 18개월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월 급여액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 기간은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지급

○ 단, 동일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휴직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아빠의 달' 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7, yjc@nabo.go.kr)

❑ 저출산 대책의 핵심사업인 육아휴직급여의 단가를 다양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 발의

○ 일 · 가족양립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체되고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및 초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

○ 육아휴직급여 단가 및 상한액이 근로자의 기존 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임금손실의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급여단가 인상 및 상·하한액 상향조정 요구 반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2017. 1. 31.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월 통상임금의 40% → 60% · 월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00만원 → 200만원
	심상정의원	2017. 6. 12.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월 통상임금의 40% → 60% · 월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00만원 → 150만원 · 월 하한액 인상: 월 50만원 → 80만원
	양승조의원	2017. 8. 17.	·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월 통상임금의 40% → 80% · 월 상한액 인상: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00만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월 하한액 인상: 월 50만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급여단가 인상 시나리오는 현행 급여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낮은 경우에는 현행 급여단가(상·하한액 포함) 적용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는 첫 3개월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통상임금의 50% 지급을 가정

-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단가를 2019년부터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로 인상할 계획

○ 월 급여 상·하한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80%로 각각 상향조정(시나리오3) 시

- 2018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67만 2,105원)을 기준으로 2016~2018년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 1.44%를 적용하여 산출

- 상한액은 2019년 169.9만원, 2023년 179.6만원이며, 하한액은 2019년 135.7만원, 2023년 143.7만원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총재정소요 -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

- 개정안 또는 현행 제도 유지 시 총재정소요= 수급자 수 × 평균 급여일액 × 평균 수급일수

※ 성별(남성·여성), 당해연도 수급자 구성(전년도 이월자·당해연도 신규수급 및 종료자·차년도 이월자)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추계

3) 추가재정소요

○ 육아휴직급여 단가 인상 및 급여 상·하한액 상향조정에 따른 2019년~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급여단가 인상	급여 상한액 상향조정	급여 하한액 상향조정	
시나리오 1	월 통상임금의 40% → 60%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 200만원	-	5,974억원
시나리오 2	월 통상임금의 40% → 60%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 150만원	월 50만원 → 80만원	2,403억원
시나리오 3	월 통상임금의 40% → 80%	첫 3개월 150만원, 이후 120만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월 50만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5,417억원

- (시나리오1)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월 200만원으로 정할 경우, 현행 상한액과의 큰 차이로 인하여 연평균 약 5,97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월 150만원, 하한액을 월 80만원으로 정할 경우, 연평균 약 2,40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3) 3개월 이후 급여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와 80%로 각각 정할 경우, 연평균 약 5,417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3.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지원: 「환경보건법」

- 어린이(0~12세)에 대한 환경성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 발생 시 진료비용 지원
- 어린이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100% 지원 시(시나리오1) 연평균 839억원, 50% 지원 시(시나리오2) 연평균 42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어린이는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환경성질환이 발생되거나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

○ 2016년 기준 전체 어린이(0~12세) 약 587만명 중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약 309만명(52.6%)에 달함

❑ 어린이 환경성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어린이 건강진단 및 진료비용 지원하는 개정안 발의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2017. 7. 13.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해 지원

이주호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5, progress@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환경성질환 중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어린이(13세 미만)가 부담하는 의료비 가운데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에 사용된 진료비 자료는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실제 진료사례를 토대로 산출

○ 환경성질환 이외의 질환과 함께 진료받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추계에서는 이를 미고려

○ 어린이 1인당 의료비 지원 비율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의 100%(시나리오1) 및 50%(시나리오2)로 가정

2) 추계 방법

○ 연간 추가재정소요= 환경성질환 진료 대상 어린이 수 × 1인당 법정 본인일부 부담금 × 지원 비율

- 각 환경성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 진료 대상자 수에 1인당 법정 본인일부부담금과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되는 진료비용 산출

- 각 환경성 질환 진료 대상자 수는 연령별 추계 인구[1] 대비 연령별 환경성 질환 진료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추계하고, 1인당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비율은 100%(시나리오1) 및 50%(시나리오2)로 가정

1) 추계기간(2019~2023년) 0~12세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0」 자료를 활용한다.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KOSIS) <http://kosis.kr, 2018. 2.17. 접속>

3) 추가재정소요

○ 어린이에 대한 환경성질환 진료비용 지원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대상	지원내역	지원비율		
시나리오 1	어린이 (0~12세)	환경성질환 의료비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100%	약 320만명	839억 100만원
시나리오 2			50%		419억 5,100만원

- (시나리오1) 어린이(0~12세)에 대한 환경성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 진료비용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100% 지원하는 경우, 연간 약 320만명에 대해 연평균 83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어린이(0~12세)에 대한 환경성질환(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간질성 폐질환) 진료비용 중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50% 지원하는 경우, 연간 약 320만명에 대해 연평균 420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V 국방 · 보훈 · 보상 · 법제사법 분야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30만원/월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9,341억원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3,43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가보훈처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696억 2,400만원 예산 편성

❑ 고령화로 인한 경제능력상실 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인 가구 중위소득에 근거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 발의[1)]

차병섭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3, felix@nabo.go.kr)
최천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2, hoi1009@nabo.go.kr)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15~2017년>

연도	2015	2016	2017	연평균 상승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1,562,337원	1,624,831원	1,652,931원	2.9%

자료: 보건복지부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2017. 9. 25.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0만원/월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조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0만원/월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100분의 2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로 가정하여 추계

○ 2016년말 기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236,994명)에 신규 등록 및 연령 도래로 인한 증가요인, 기존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감소요인 등을 반영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인원 추정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인원: 2019~2023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급 대상인원	195,994명	183,092명	170,178명	157,260명	144,341명

자료: 국가보훈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현행 참전명예수당(30만원/월)은 5년(2019~2023년) 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

- 참전명예수당은 2013년 15만원/월, 2014년 17만원/월, 2015년 18만원/월, 2016년 20만원/월, 2017년 22만원/월로 5년 간 총 7만원이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5년 간 추가 인상은 없는 것으로 가정

○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승률 2.9%를 적용하여 추정

<1인 가구 중위소득 추정>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20,596원	1,770,493원	1,821,837원	1,874,670원	1,929,035원

주: '18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원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 단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 혹은 25%) × 12개월

3) 추가재정소요

○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2019 ~ 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로 인상	8,703억원
시나리오 2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5%로 인상	3,142억원

- (시나리오1)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0만원/월에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8,703억원(총 4조 3,51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30만원/월에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25%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3,142억원(총 1조 5,709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국선전담변호 지원' 추가: 「법률구조법」

-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지원 및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등 인사관리를 위한 사무인력을 두는 경우의 재정소요 추계
- 사무인력을 본부에만 4명 두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억 8,100만원, 각 지부 1명 포함 총 22명을 두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4억 4,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국선변호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2004년에 도입

○ 현재 「형사소송법」 제33조 및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직접 채용한 전담국선변호사를 활용하거나 매년 각급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 변호사 명단 활용[1)]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국선변호인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두고 그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인사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및 국선변호인 인사관리를 담당할 사무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검토

남정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1, koba27@nabo.go.kr)

1) 2018년 현재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는 229명,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수는 6,000여명이며, 2018년도 법원의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예산은 595억 2,400만원이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2017. 12. 22.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통)인사관리위원회 위원 9명 모두 비상임위원(외부위원)이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공단소속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등 인사관리 및 인사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하여 공단에 사무인력을 증원

- 본부에만 4명 증원하는 경우(시나리오1)와 지부에도 각 1명씩 증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가정,[2]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추계대상에서 제외[3]

2) 공단 조직은 본부 및 지부(18개 지부), 법문화교육센터, 출장소 및 지소로 구분된다.
3)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채용을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선발지원시스템(2012년, 개발비 3억 5,800만원)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업무 등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대법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추계 방법

○ 연간 추가재정소요=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비 + 국선전담변호사 인사관리 사무인력 인건비 등

- 위원회 운영비는 전원 비상임, 월 1회 회의 개최, 수당 20만원 등
- 사무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 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4] 사무국 예산을 개정안의 사무인력 인건비 추정 등에 활용[5]

3) 추가재정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에 '국선전담변호 지원'을 추가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공통)		위원 9명(비상임), 연 12회, 회의수당 20만원 지급	2,160만원
인사관리 사무인력	시나리오 1	본부에만 4명	2억 5,920만원
	시나리오 2	본부 4명 + 18개 지부 각 1명	14억 2,500만원

-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연간 2,160만원(9명 × 12회 × 20만원, 총 1억 800만원)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법무부 예산에 별도 편성되어 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2018년도 예산은 인건비 19억 2,300만원(1인당 5,300만원), 기본경비는 1억 2,100만원(인건비의 6.3%)이다. 자산취득비는 2019년 1인당 500만원으로 가정한다.

-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등 인사관리 업무 사무인력 비용)
  - 시나리오1: 사무인력을 본부에만 4명두는 경우, 연평균 2억 5,920만원(총 12억 9,600만원)
  - 시나리오2: 사무인력을 22명(시나리오1+18개지부 각1명)두는 경우, 연평균 14억 2,500만원(총 71억 2,500만원)

라. 참고사항

❑ 국선전담변호사의 '변론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관리감독기관이 제도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개선 논의가 있음[6)]

6)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어 있다(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국선 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14.12.) 등 참조).

3.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법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0억 3,4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별(17개 시 · 도) 설치 · 운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77억 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관리비 등의 정보를 수집 · 공개하는 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 · 관리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운영중

❑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의혹 · 분쟁의 해소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시 · 도)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개정안 발의

김진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7, dream@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2017. 2. 2.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집합건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유은혜의원	2017. 9. 26.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법무부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시나리오1)

- 국토교통부의 예에 따라 법무부에 단일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사업방식 · 단가 등 적용

○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시나리오2)

- 17개 시 · 도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사업방식 · 단가 등 적용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시스템 구축비 + 시스템 운영비(유지보수비 + 콜센터운영비)

- 시스템 구축비로 시스템개발비(기술자 인건비 등), 장비구입비(H/W, S/W 등) 소요
- 시스템 운영비로 유지보수비(기술자 인건비 등), 콜센터운영비(유선상담사 인건비, 통신비 등) 소요

3) 추가재정소요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법무부에 단일 시스템 구축·운영	10억 3,400만원
시나리오 2	17개 시·도에 시스템 구축·운영	77억 900만원

- (시나리오1) 2019년 시스템 구축비로 25억 8,900만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스템 운영비(유지보수비, 콜센터운영비)로 연평균 10억 3,400만원(총 25억 8,1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2019년 시스템 구축비로 156억 400만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스템 운영비(유지보수비, 콜센터운영비)로 연평균 77억 900만원(총 229억 3,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Ⅵ 안전 · 행정 분야

1.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국고 보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내진보강 보조사업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연간 20,816개동의 내진보강 비용 10~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231~6,157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예상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연간 79,811개동의 내진보강 비용 10~50%를 보조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4,721억원~2조 3,606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공공시설 · 건축물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내진보강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미

○ 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등의 유인제도가 존재하나, 내진보강공사비용 대비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음[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개정안 발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1, mylee@nabo.go.kr)

1)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지방세 감면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2017. 3. 3.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박명재의원	2018. 2. 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법」에 근거하여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할 민간건축물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5,700,849개동이고, 이 중 10.4%에 해당하는 593,304개동만 내진성능을 확보

○ 내진보강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민간건축물 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추정

- (시나리오1) 2011년 기준 34%인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구)국민안전처의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35.8%로 1.8%p 상승한 사례를 적용하여 동 비율만큼 민간건축물(연간 20,816개동)에도 보강사업이 실시된다고 가정

- (시나리오2) 2015년 기준 42.4%인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을 2020년까지 49.4%로 7%p 높일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동 비율만큼 민간건축물(연간 79,811개동)에도 보강사업이 실시된다고 가정

○ 내진보강 공사단가(2015년 기준, 95,000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민간건축물 1개동(평균 연면적 554㎡)의 내진보강 공사비용 추정

<민간건축물 1개동의 내진보강 비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내진보강 비용	5,660만원	5,790만원	5,910만원	6,040만원	6,180만원

○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국고 보조율을 내진보강 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민간건축물 수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10%, 50%로 가정하여 추가 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연간 내진보강 민간건축물 수 × 내진보강 비용 × 보조율

3) 추가재정소요

○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연간 20,816개동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10% 보조	1,231억원
		내진보강 비용 50% 보조	6,157억원
시나리오 2	연간 79,811개동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10% 보조	4,721억원
		내진보강 비용 50% 보조	2조 3,606억원

- (시나리오1) 연간 20,816개동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을 10% 보조하는 경우 연평균 1,231억원(총 6,157억원), 50% 보조하는 경우 연평균 6,157억원(총 3조 7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연간 79,811개동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을 10% 보조하는 경우 연평균 4,721억원(총 2조 3,606억원), 50% 보조하는 경우 연평균 2조 3,606억원(총 11조 8,032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라. 참고사항: 주요 국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국고 보조 현황

○ 일본의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2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 11.5%)이고 건축물의 유형별로 지원 최대액을 규정[2)]

- 단독주택의 지원금은 가구당 82.2만엔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지원금은 48,300엔/㎡×바닥면적×보조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3층 이상 1,000㎡이상의 특정건축물(상업시설, 호텔, 여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원금은 50,300엔/㎡×바닥면적×보조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을 포함한 긴급수송도로변 건축물은 국가가 1/3, 지방자치단체가 1/3으로 총 2/3의 비용을 지원[3)]

○ 대만의 경우,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비용의 55%를 지원[4)]

---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6),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기법 조사 및 소요비용 분석 연구」를 참조한다.
3) 긴급수송도로는 지진 등 재해시 피난이나 구급·소방 긴급물자 수송의 대동맥이 되는 간선도로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복구를 위하여 인접건물의 붕괴에 의한 도로 폐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비용의 2/3를 지원한다.
4) '지진방재대책 발전을 위한 국제세미나'(2017.9.)

2.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복구 시 국고보조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택 전파 및 반파에 대한 국고 지원 시 부담액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부담률 30% 적용 시(시나리오1) 연평균 75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부담률 80% 적용 시(시나리오2) 연평균 21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가. 개 요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 반파, 소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액(2017년 기준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 소파 100만원)에 전파·반파 시 부담률 30%, 소파 시 100%를 적용하여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의 복구지원금 지급[2)]

○ 주택의 전파 및 반파는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 또는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복구비 지원 미미

❑ 주택 전파 및 반파에 대한 국고 지원 시 부담액과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1, mylee@nabo.go.kr)

1)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축이 필요하면 전파, 수리가 가능하면 반파이다. 이때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에서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중 주택복구 시 부담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2017. 11. 20.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 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 국비 부담률을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2017. 11. 27.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지진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지진피해 사례(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를 근거로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지진으로 인한 주택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액을 전파 기준 3억원(반파 1.5억원)으로 가정

○ 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한 30%, 개정안에서 제시한 80%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추가재정소요 검토

〈지진에 따른 주택피해 건수와 부담액 및 부담률 비교〉

구분	연평균 발생건수	현행		시나리오	
		부담액	부담률	부담액	부담률
전파	67건	3,000만원	30%	3억원	30%, 80%
반파	50건	1,500만원	30%	1.5억원	30%, 80%

2) 추계 방법

○ 최근 5년(2013~2017) 동안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 및 반파 평균 건수에 현행에 따른 지원금과 부담액 및 부담률 상향 조정에 따른 지원금을 적용하여 그 차이를 계산

○ 추가재정소요(전파 기준)= (건수 × 3억원 × 부담률) - (건수 × 3,000만원 × 부담률)

3) 추가재정소요

○ 주택 전파 및 반파에 대한 부담액과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여 국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따른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추가재정소요>

구분	기준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부담액 3억원, 부담률 30%	74억 5,200만원
시나리오 2	부담액 3억원, 부담률 80%	212억 5,200만원

- (시나리오1) 주택 전파 및 반파 시 부담액 3억원 및 1.5억원, 부담률 30%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74억 5,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 (시나리오2) 주택 전파 및 반파 시 부담액 3억원 및 1.5억원, 부담률 80%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212억 5,2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 예상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2 장
수입법안

※ 일러두기: 수입부분의 연평균 재정소요는 재정수입의 감소·증가로 표시되었음

Ⅰ 소득과세 분야

1.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총급여 기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모든 무주택 근로자에게 12%의 공제율을 적용(총급여 기준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10→12%)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1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지급액의 10~12%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 2017년 12월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한하여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2%로 2%p 상향

김혜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5, khl@nabo.go.kr)

대상	개정 전	개정 후 (2018년 1월 1일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0%	12%
총급여 5,500~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4,000~6,000만원)		10%

❑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거나 세액공제 대상을 선정하는 총급여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2016. 10. 26.	총급여 기준 축소(7,000만원 → 5,500만원)
	박광온의원	2017. 8. 2.	공제율 인상(10% → 15%)
	이언주의원	2017. 9. 14.	공제율 인상(10% → 15%) 총급여 기준 확대(7,000만원 → 8,000만원)
	노회찬의원	2016. 11. 1. 2017. 11. 10.	공제율 인상(10% → 15%) 보증금 이자, 이사비, 중개보수 등도 세액공제
	정부	2017. 9. 1.	공제율 인상(10% → 12%)

주: 1. 박광온의원안, 이언주의원안, 노회찬의원안, 정부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2. 박주현의원안은 세액공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비용추계 미대상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19년 징수분부터 세수효과 발생

○ 2017국세통계연보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활용하여 공제세액 증가분 추정

- 국세통계연보의 공제대상 금액에서 5,500만원 이하 구간은 해당금액보다 2%p 높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 5,000만원 초과 5,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인원과 공제대상 금액은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구간의 절반이라고 가정

○ 향후 5년간 세수 증가율은 최근 3년 월세거래량 증가율 평균(3.0%)[1]과 동일하다고 가정

2) 추계 방법

○ 공제율 인상

- [1인당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율 인상분] × 인원수
- 다만,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공제대상 금액에 공제율 인상분을 곱한 것이 1인당 결정세액보다 클 경우 결정세액만큼만 세액공제 받는다고 가정

○ 총급여 기준 확대(7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총급여 7~8천만원 구간 대상인원을 추정하고,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월세세액공제액(37.55만원)과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1) 최근 3년간 월세거래량 증가율은 2015년 8.3%, 2016년 1.4%, 2017년 -0.6%이다.

3) 재정수입 증감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총급여 기준 변경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모든 공제대상 공제율 12% 적용 (총급여 5,500만원 이상, 10% → 12%)	-30억원
시나리오 2	모든 공제대상 공제율 15% 적용 (10~12% → 15%)	-212억원
시나리오 3	총급여 기준 확대 (7,000만원 → 8,000만원)	-7.3억원

- (시나리오1)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도 공제율을 2%p 인상하여 모든 월세 세액공제대상에게 12%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30억원(총 1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모든 월세 세액공제대상의 공제율을 15%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212억원(총 1,02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3) 총급여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평균 7.3억원(총 35.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한도를 차등적으로 축소(취학전아동·초중생 300→100만원, 고등학생 300→200만원, 대학생 900만원→0원)하는 경우 연평균 6,80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한도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전아동·초중고생일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일 경우 1인당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단,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전액 공제)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소득세수 증가 예상

○ 참고로 동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2017. 10. 26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축소(취학전아동·초·중등학교 300만원→100만원, 고등학교 300 → 200만원, 대학교 900만원 → 0원)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9, min1231@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교육비 신청 인원 및 금액 분포는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하되,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공제액 변화율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추정

-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공제자료는 공제대상자의 학교(초 · 중 · 고등학교 등)별로 구분되지 않아, 이를 통해 동 개정의 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움

○ 가계동향조사의 근로자 가구 교육비 분포가 국세통계연보와 일치한다고 가정

- 단, 가계동향조사에는 총급여 2억원 초과 구간의 샘플이 존재하지 않아서, 동 구간의 감소율은 1~2억원 구간의 교육비 공제 감소율과 같다고 가정

○ 향후 세수효과는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하나, 교육비 공제신청 대상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 교육비 공제 신청 대상인원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2%(통계청의 2016 인구총조사 기준, 2017.8. 발표)

- 교육비 상승률의 지표로 볼 수 있는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은 이와 유사한 2%대(NABO의 2018~201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1.9~2.2%, 2017.9. 발표)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수입=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공제액 변화율 추정치 × 세액공제율 15%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별 2016년 근로자 교육비 공제 신청현황 자료 활용 교육비 공제 신청인원은 259.1만명, 1인당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은 294만원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공제액 변화율 추정치	통계청의 미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활용 소득구간별로 각 가구주의 교육비 공제 신청 인원 및 공제 대상 금액을 현행 및 개정안 기준으로 추계한 후,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공제액 변화율을 추정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한도를 축소하고, 대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를 전액 없앰에 따라, 교육비 공제대상 인원 및 공제대상금액이 동시에 변화

3) 재정수입 증감

○ 교육비 공제제도 축소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 축소 (취학전아동·초·중등학교 300만원 → 100만원, 고등학교 300 → 200만원, 대학교 900만원 → 0원)	연간 259.5만명	6,805억원

- (시나리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취학전아동·초·중등학교 300만원 → 100만원, 고등학교 300 → 200만원, 대학교 900만원 → 0원으로 축소할 경우, 연평균 6,805억원(총 3조 4,026억원)의 재정수입 예상

3.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해당 비용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4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신설하는 경우(시나리오 2) 연평균 8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자 본인 혹은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 신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2017. 9. 8	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시 해당 비용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신설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9, min1231@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은 보건복지부(2016.12.)의 산후조리원 현황의 평균 금액을 활용하였으며,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금액 역시 이와 동일하다고 가정

○ 동 제도 신청인원은 국세통계연보(2016.12.)의 출산입양공제자 인원에 기혼 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59.8%,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을 활용하여 추계

- 단, 집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사용하는 비율은 자료의 한계로 본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5년간 산후조리원 등 이용금액 증가율은 NABO(2017.9.)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향후 5년간 공제신청인원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2015~2065)의 출생아수 중위추계 기준 증가율을 활용하여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1인당 산후조리비용 추정치 ×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신청인원 추정치

〈추계 방법〉

변수값	세부내용
1인당 산후조리비용 추정치	보건복지부(2016.12.)의 산후조리원 현황의 평균 금액은 전국기준으로 255만원 향후 5년간 산후조리원 등 이용금액 증가율은 NABO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활용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국세통계연보의 2016년 출산입양자 공제 신청현황 자료 활용 약 20만명이 출산입양자 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이들의 유효세율 (결정세액/과세표준)은 7.3%임 향후 5년간 출산입양자 공제 신청인원의 유효세율은 2016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신청인원 추정치	출산입양자 소득공제 신청인원에 기혼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율(59.8%)을 곱하여 추계 기혼여성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활용 향후 5년간 공제신청인원 증가율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의 출생아수 중위추계 기준 증가율을 활용하여 추계

3) 재정수입 증감

○ 산후조리원 등 이용비용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2019 ~ 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 전액 소득공제	연간 11.9만명	-246억원
시나리오 2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설정	연간 11.9만명	-87억원

- (시나리오1)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 전액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경우, 연평균 24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거주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비용을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연평균 87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4.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52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장려세제의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완화(1,300~2,500→1,700~3,000만원)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77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근로장려세제의 부양자녀 연령요건을 완화(18세 미만→20세 미만)하는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22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대상요건, 가구요건 및 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필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현 행(2018)
①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자
② 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③ 소득요건(만원): 1,300(단독) / 2,100(홑벌이) / 2,500(맞벌이) 미만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④ 재산요건: 토지 · 건축물 등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2, jwpark1209@nabo.go.kr)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구성	총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85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50만원

❑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 또는 소득요건 완화 시 신규 지급대상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2017. 9. 14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1.4억원→2억원)
	윤호중의원	2017. 11. 13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완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1,300/2,100/2,500→1,700/2,500/3,000)

주: 이언주의원안, 윤호중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8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019년부터 지급되는 것을 전제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조정에 따른 비용추계 안 제시

- (시나리오1) 재산요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
- (시나리오2) 소득요건 연간 1,300/2,100/2,500만원에서 1,700/2,500/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시나리오3) 부양자녀 연령 요건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향후 세수효과는 연간 5.6~5.9%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

- (시나리오1 · 2) 제도 유지 시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전체 수급가구수 5.9%(2009~2011년 평균)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3) 제도 유지시 부양자녀수 감소 등으로 홑벌이 · 맞벌이 수급가구수 5.6%(2016~2017년 평균)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신규 수급가구수 × 2019년 가구당 평균지급액

- 2018년의 평균지급액이 2019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18년 평균지급액= 2017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실적) × (1 + 2018년 지급액 인상율 9.1%)

○ 신규 수급가구

- (시나리오1) 재산요건을 1.4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43%) 시 36.1만가구 규모의 신규 수급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1)2)]
- (시나리오2)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400~500만원 상향조정 시 25.2만 가구의 추가 지급대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3)4)]

---

1) 2015년(지급연도) 재산요건 40%(1억원 → 1.4억원) 완화 시 신규수급가구 20.2%(20.7만가구) 발생한 바 있다. 동 비율을 2018년도 수급대상가구(167.2만가구, 추정치)에 적용하여 추정한다.
2) (시나리오1) 2019년 기준 재정소요: 36.1만 가구 × 474,886원(재산 1억원 이상 가구 평균지급액)= 1,715억원
3) 2016년 가계동향조사로 모의실험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 (시나리오3) 18~19세 미혼자녀를 둔 신규 수급대상 가구는 2.5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5)6)]

3) 재정수입 증감

○ 근로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재산요건 상향조정 (1.4억원 → 2억원)	-1,524억원
시나리오 2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상향조정 (1,300/2,100/2,500 → 1,700/2,500/3,000만원)	-1,778억원
시나리오 3	부양자녀 연령요건 완화 (18세 미만 → 20세 미만)	-226억원

- (시나리오1)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을 상향조정할 경우, 연평균 1,524억원(총 7,62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근로장려세제 가구유형별 소득요건을 상향조정할 경우, 연평균 1,778억원(총 8,88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3) 근로장려세제 부양자녀 연령요건을 완화할 경우, 연평균 226억원(총 1,12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4) (시나리오2) 2019년 기준 재정소요: 25.2만 가구×793,084원(전체가구 평균지급액)= 2,000억원
5) 가계동향조사(2016)에 따르면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인 가구(1,455만 가구) 대비 18~19세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21만 가구)의 비율은 1.5%이다. 현행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무자녀 가구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이므로, 2018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167만가구) 추정치에 18~19세 미혼자녀 가구 비율(1.5%)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대상 가구수를 추정한다.
6) (시나리오3) 2019년 기준 재정소요: 2.5만 가구×1,027,952원(홑·맞벌이 평균지급액)= 253억원

5. 자녀장려세제 자격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완화(2억원 미만→2.8억원 미만)하는 경우 연평균 17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저소득 가구의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양육 지원

○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요건 및 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부양자녀(18세 미만) 당 최대 50만원 지급

❑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 완화 시 신규 지급대상 가구가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 예상

〈자녀장려금 수급요건〉

현 행(2018)
①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②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③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산정액의 50%만 지급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2, jwpark1209@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2017. 9. 27	자녀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 (2억원→2.8억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8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019년부터 지급되는 것을 전제

○ 향후 세수효과는 연간 12.2%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

- 제도 유지 시 부양자녀수 감소 및 명목소득 상승 등으로 향후 대상가구의 탈락이 예상됨

- 자녀장려세제 지급대상 가구 2015~2016년 중 연간 12.2% 감소

2) 추계 방법

○ (추계 방법) 추가재정소요= 2019년 신규 수급가구수 × 가구당 평균지급액

○ (신규 수급가구)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완화될 경우 추가 지급대상은 약 7.9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 수는 전년도 대비 8.8%(8.3만 가구) 증가

  * 2017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1억 4천만 원→2억원 미만, 1.4배 상향조정)로 인해 추가 지급대상은 15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부양자녀 감소 및 재산 요건 탈락 등으로 2017년 총 지급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8.3만 가구 증가

- 2019년에도 2017년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요건이 완화될 경우, 신규 지급 대상은 전년 대비 8.8%(7.9만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

  * 2017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가 없는 2018년에는 연간 12.2%의 가구감소율 반영하며, 2019년은 재산요건 완화(2억원→2.8억원 미만, 1.4배 상향 조정)에 따른 증가율(8.8%)을 반영

○ (재정소요) 2019년 기준으로 재산요건 완화 시 연간 223억원의 추가 지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추가 지급대상 가구에 재산 1억원 이상 평균 지급액(2017년 281,757원)을 적용하면 연간 지급액은 223억원으로 추산됨

  * 7.9만 가구 × 281,757원= 222.8억원

3) 재정수입 증감

○ 자녀장려세제 재산요건 완화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재산요건 상향조정(2억원→2.8억원)	-175억원

- (시나리오) 자녀장려세제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8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향후 세수효과를 연간 12.2%감소하는 것으로 전제할 경우, 연평균 175억원(총 8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6.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근로자 중 3년 이상 8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5%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6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 근로자 중 8년 이상 13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세액감면 10%를 적용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3,34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5~10% 감면을 신설하는 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감면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2017. 7. 14.	중소기업 3년 이상 근속자의 근속연수별 5%~20% 세액감면 신설
	조정식의원	2016. 7. 4.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의 근속연수별 10%~25% 세액감면 신설
	박광온의원	2016. 7. 26.	중소기업 10년 이상 근속자의 근속연수별 5%~10% 세액감면 신설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jitae@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별 근로자 수 및 1인당 평균급여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출

○ 근로자 임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임금증가율 전망에 따라 증가

○ 소득세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금액구간별 과세소득 대비 산출세액 비율이며, 비용추계 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

○ 중소기업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 차등 적용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1) 근속연수 3년 이상 8년 미만 근로자, 소득세 5% 감면
- (시나리오2) 근속연수 8년 이상 13년 미만 근로자, 소득세 10% 감면

2) 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대상근로자 수 × 1인당 소득세 감면액

- 1인당 소득세 감면액= 1인당 평균급여 ×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 세액감면율

3) 재정수입 증감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중소기업 3년 이상 8년 미만 근속자 대상 5% 세액감면	-2,683억원
시나리오 2	중소기업 8년 이상 13년 미만 근속자 대상 10% 세액감면	-3,346억원

- (시나리오1) 중소기업 3년 이상 8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5% 감면시 향후 연평균 2,683억원(총 1조 3,41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중소기업 8년 이상 13년 미만 근속자의 소득세 10% 감면시 향후 연평균 3,346억원(총 1조 6,73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총 6,724,043명, 근속연수 구간별 1인당 평균 급여는 3,016만원~6,016만원 수준

<근속연수별 중소기업 근로자 현황(인원/평균 급여)>

근속연수	인원수	1인당 평균 급여
3년 이상 8년 미만	3,858,313명	3,016만원
8년 이상 13년 미만	1,368,371명	3,794만원
13년 이상 18년 미만	740,865명	4,456만원
18년 이상	756,494명	6,016만원
합 계	6,724,043명	

주: 인원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며, 1인당 평균 급여는 가중평균으로 산출
자료: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1) 2016년 6월 기준 32,960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5만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연령, 경력연수, 근로형태, 급여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II 법인과세 분야

1. 법인세율 조정(인상·인하): 「법인세법」

- 현행 10~25%의 세율을 7~20%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7.48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현행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25%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경우(시나리오4) 연평균 1.30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 25%의 법인세율을 적용

○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 귀속소득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

〈법인세율(%)〉

<table>
<tr><th rowspan="2"></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2</th><th>2018</th></tr>
<tr><th>2단계</th><th>2단계</th><th>2단계</th><th>3단계</th><th>4단계</th></tr>
<tr><td>~ 2억원</td><td>13</td><td>11</td><td>10</td><td>10</td><td>10</td></tr>
<tr><td>2 ~ 200억원</td><td rowspan="3">25</td><td rowspan="3">22</td><td rowspan="3">22</td><td>20</td><td>20</td></tr>
<tr><td>200 ~ 3,000억원</td><td rowspan="2">22</td><td>22</td></tr>
<tr><td>3,000억원 ~</td><td>25</td></tr>
</table>

신영임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8, econoim@nabo.go.kr)

❑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수 증가,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노회찬의원	2017. 11. 9.	~2억원/~20억원/20억원~: 10%, 20%, 25%
	추경호의원	2017. 11. 8.	~2억원/~200억원/200억원~: 7%, 18%, 20%
	정갑윤의원	2017. 7. 10.	~2억원/~10억원/~20억원/~80억원/ ~140억원/~200억원/200억원~: 10%, 12%, 14%, 16%, 18%, 20%, 22%
	이언주의원	2016. 10. 19.	~2억원/~200억원/~2000억원/ ~5000억원/~1조원/1조원~: 10%, 20%, 23%, 26%, 29%, 32%
	박주현의원	2016. 10. 19.	~2억원/2억원~: 10%, 25%
	김성식의원	2016. 9. 27.	~2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4%
	박영선의원	2016. 9. 26.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단, 최고세율 1차연도 23%, 2차연도 24%)
	윤호중의원	2016. 9. 19.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박주민의원	2016. 6. 16.	~2억원/~500억원/500억원~: 10%, 22%, 25%
	김동철의원	2016. 6. 2.	~2억원/~100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2%, 25%

주: 박영선의원안, 박주민의원안, 김동철의원안 폐기(2018. 2. 9)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전체기업 및 법인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과 같을 것으로 가정

- 경상성장률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
- 향후 법인 수가 2015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

○ 법인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들의 행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 주요 시나리오

- (세율 인상) ~2억원/~200억원/200억원~: 7%, 18%, 20%
- (세율 인하)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2) 추계 방법

○ 과표구간별로 "1개 법인당 세법개정 전후의 법인세 차이×법인 수" 방식으로 구한 후, 각 과표구간의 세수효과를 합산

3) 재정수입 증감

○ 법인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 법인 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2억원/~200억원/200억원~: 7%, 18%, 20%	309,192	−7.48조원
시나리오 2	~2억원/2억원~: 10%, 25%	81,692	6.57조원
시나리오 3	~2억원/~200억원/200억원~: 10%, 20%, 24%	1,138	0.61조원
시나리오 4	~2억원/~200억원/~500억원/500억원~: 10%, 20%, 22%, 25%	1,138	1.30조원

- (시나리오1) 현행 10~25%의 세율을 7~20%로 인하하는 경우, 연평균 7.48조원(총 37.41조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20~25%를 일률적으로 25%로 변경하는 경우, 연평균 6.57조원(총 32.86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3)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22%, 25%를 일률적으로 24%로 변경하는 경우, 연평균 0.61조원(총 3.05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4) 현행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25%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1.30조원(총 6.51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2. 최저한세율 조정(인상·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7%, 10%를 각각 4%, 7%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82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인상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81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받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

○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액(= 감면전 과표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 시행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모든 감면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법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게 되고,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재정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

○ 현재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10%, 12%, 17%를 적용

신영임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8, econoim@nabo.go.kr)

〈최저한세율(%)〉

소득귀속연도	중소기업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 이하)	일반기업 (1천억원 초과)
2012	7	10	11	14
2013	7	10	12	16
2014~ (현행)	7	10	12	17

❑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수의 증가가,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경우 법인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2017. 11. 9.	현행 중소기업/일반 ~100억원/ 일반 ~1,000억원/ 일반 1,000억원~: 7%, 10%, 12%, 17%→ 7% 10%, 15%, 20%
	추경호의원	2017. 11. 8.	7%, 10%, 12%, 17%→ 4% 7%, 12%, 17%
	이언주의원	2016. 10. 19.	7%, 10%, 12%, 17%→ 7% 10%, 14%, 19%
	정성호의원	2016. 7. 4.	7%, 10%, 12%, 17%→ 7% 10%, 14%, 18%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향후 전체기업 및 법인 당 과세표준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전망과 같을 것으로 가정

- 경상성장률에 대한 과세표준의 탄력성이 1이라고 가정

- 향후 법인 수가 2015년과 같을 것으로 가정

○ 최저한세율 변경으로 인한 법인들의 행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가정

○ 주요 시나리오

- (세율 인상)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일반기업 12%, 17%→14%, 18%
- (세율 인하) 중소기업 및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일반기업 7%, 10%→ 4%, 7%

2) 추계 방법

○ 유효세율이 a%보다 낮을 경우, 개정 전에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a%'의 세금을 납부하다가, 개정 후에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b%'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변화분 (b-a)%p'임

○ 유효세율이 a%보다 높지만 b%보다 낮은 기업은 개정 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다가, 개정 후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세수효과는 '과세표준 × (b% - 유효세율)'임

3) 재정수입 증감

○ 최저한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 법인 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1	7%, 10%, 12%, 17%→4% 7%, 12%, 17%	12,118	−825억원
시나리오2	7%, 10%, 12%, 17%→7% 10%, 14%, 18%	85	2,815억원

- (시나리오1) 최저한세율 7%, 10%를 각각 3%p 인하한 4%, 7%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825억원(총 4,12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2%p, 1%p 인상한 14%, 18%를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2,815억원(누적 14,07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4년)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57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함(3% → 5%)과 동시에 일몰기한(4년)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95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중소 ·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POS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3%	3%	1%	2%

❑ 동 제도의 일몰기한(2018.12.31.)을 연장하거나 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수 감소 예상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kybaek@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2016. 9. 2.	중소기업 공제율 확대(3 → 5%) 신규상장 중소 · 중견기업의 공제율 확대(4% → 6%)

주: 박광온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통)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설비투자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2021년 전망값을 사용하고, 2022~2023년은 2021년 값을 연장
- 재정소요액 산정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고려하며 징수기준에 따름

○ 현 제도의 단순 일몰 연장과 중소기업 공제율 수준을 확대한 후 일몰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1) 현 제도를 유지하며 일몰기한만 4년 연장
- (시나리오2)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인상한 후 일몰 4년 연장, 세수감면 규모는 공제율 인상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세액공제 실적 × 설비투자증가율 × 공제율변동분

3) 재정수입 증감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소요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일몰 4년 연장 (2018. 12. 31. → 2022. 12. 31.)	-571억원
시나리오 2	중소기업 공제율 5%로 2%p 인상 + 일몰 4년 연장 (2018. 12. 31. → 2022. 12. 31.)	-952억원

- (시나리오1) 현 제도를 유지하며 일몰기한만 4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571억원(총 2,85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함과 동시에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952억원(총 4,78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최근 개정 연혁 및 쟁점

○ 2014년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공제율(4%) 신설

- 현행 중견기업 공제율: 당기분 8%, 증가분 40%

○ 2017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재설계

-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 → 중소 · 중견기업(단, 중견기업은 투자지역에 따라 공제율 차등)

❑ 해외 사례

○ 미국: 연간 투자금액이 2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지출금액의 100% 특별 상각 가능 (IRC§179)

○ 독일: 자산총액 23.5만 유로 이하 기업이 감가상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20%의 특별 상각 가능

○ 일본: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연도에 30%의 비용공제(가속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 중 택일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82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31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일반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신성장 서비스업	
3년간	그후 2년	3년간	그후 2년
50%	50%	75%	50%

❑ 동 제도의 일몰기한(2018.12.31.)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 · 소득세수 감소 예상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kybaek@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2017. 7. 7.	청년창업기업의 감면기간 확대 (5년 → 8년)
	김수민의원	2017. 8. 7.	청년창업기업의 감면율 확대 (3년 75%, 2년 50% → 3년 100%, 2년 75%)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공통) 세액감면 규모는 과거 5년(2012~2016년) 조세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9.9%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동향」에 따른 2016년 전체 창업기업 중 청년창업 기업(창업주 연령 30대 미만)의 비중 6.3%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

○ 현 제도의 단순 일몰 연장과 창업 중소기업 공제율 수준을 확대한 후 일몰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1) 현 제도를 유지하며 일몰기한만 3년 연장

- (시나리오2)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최초 3년 75%, 그후 3년 50%에서 최초 100%, 그후 2년 75%로 인상한 후 일몰 3년 연장, 세수 감면 규모는 감면율 인상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세액감면 실적 × 조세지출액 증가율 × 감면율 변동분

3) 재정수입 증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조정에 따른 2020~2026년 재정소요 증감은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로 인해 '19년 창업기업의 경우 '20~'24년까지(5년간) 감면을 받으며, 일몰 종료 연도인 '21년 창업기업은 '22~'26년까지(5년간) 감면을 받게 되어 재정소요액은 '20~'26년까지 발생함

〈2020~2026년 재정수입 증감 〉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 (2018.12.31. → 2021.12.31.)	−1,826억원
시나리오 2	청년창업기업 감면율 25%p 인상 + 일몰 3년 연장 (2018.12.31. → 2021.12.31.)	−2,313억원

- (시나리오1) 현 제도를 유지하며 일몰기한만 3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1,826억원(총 1조 2,77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청년창업기업의 감면율을 3년 100%, 그 후 75%로 확대함과 동시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연평균 2,313억원(총 1조 6,19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최근 개정 연혁 및 쟁점

○ 2016년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3년 75%, 2년 50%)

○ 2017년 창업중소기업 중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율 확대(3년 75%, 2년 50%)

❑ 해외 사례

○ 미국: 창업기업의 창업비용을 5만 달러 한도로 비용공제

○ 영국: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의 225%를 세액감면

○ 프랑스: 신생혁신기업에 대해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3년간 100%, 그후 2년간 50%)하되 감면액의 15%를 R&D 비용으로 지출해야 함

5.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율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934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6,61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중소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할 경우(시나리오3) 연평균 95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비용'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1)]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대상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중견기업	8%	40%
대기업	0~2%	25%

주: (당기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 (증가분) 전년 대비 R&D 비용 증가분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jitae@nabo.go.kr)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54회 제14차 본회의(2017.12.1.)를 통과하였다.

❑ 재정수입 변동요인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축소 및 확대, 일몰 연장할 경우 법인세수 감소 영향

○ 세액공제율 확대, 일몰연장→세수입 감소, 세액공제율 축소→세수입 증가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2017. 9. 12.	중소기업 공제율 확대(당기분 25%→30%) 중견기업 공제 폐지(증가분 40%→폐지) 대기업 공제율 축소(증가분 30%→20%)
	박주현의원	2017. 9. 29.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폐지
	박광온의원	2017. 11. 8.	중견기업의 신기술 R&D 지출액 공제율 확대(30%→40%)

주: 이언주의원안, 박주현의원안, 박광온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근 실적치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을 전제

- 세액공제액 중 당기분과 증가분 규모는 최근 연도 실적치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당기분과 증가분 공제액의 비중을 고정하여 산출
- 재정소요액 산정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고려함

○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을 차등 조정하는 시나리오 가정

- (시나리오1)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율 확대(현행 25% → 30%, 5%p확대)
- (시나리오2) 대기업 및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폐지
- (시나리오3)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율 확대(현행 25% → 30%, 5%p 확대),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축소(현행 2% → 1%, 1%p 축소)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세액공제액 × 당기 또는 증가분 비중 × 공제율 변화

3) 재정수입 증감

○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업규모별 세액공제율을 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율 5%p 확대	−1,934억원
시나리오 2	대기업/중견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6,614억원
시나리오 3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율 5%p 확대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1%p 축소	−951억원

- (시나리오1) 중소기업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5%p 확대함에 따라 연평균 1,934억원(총 9,67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폐지함에 따라 연평균 6,614억원(총 3조 3,06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3)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당기분 공제율을 확대함에 따라 연평균 951억원(총 4,75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최근 개정 연혁 및 쟁점

○ 2014년 적용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현재까지 공제율 변동 없이 유지

- 현행 중견기업 공제율: 당기분 8%, 증가분 40%

○ 반면 대기업 당기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은 점진적인 축소 추세

- 대기업 당기분 공제율 추이: ('11년) 3~6%, ('14년) 3~4%, ('15년) 2~3%, ('17년) 1~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축소 조치에 해당

- 단,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가 기술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기술경쟁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6. 설비투자세액공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환경보전시설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2,33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수준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연장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29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시설투자액의 최소 1%~최대 10% 세액공제를 적용[1)]

대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에너지절약시설	1%	3%	6%
환경보전시설	1%	3%	10%

❑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일몰 연장 조치는 법인세수 증가 영향

○ 세액공제율 확대, 일몰연장 → 세수 감소, 공제율 축소 → 세수 증가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jitae@nabo.go.kr)

1)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54회 제14차 본회의(2017.12.1.)를 통과하였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2017. 7. 12.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2017.12.31.→2021.12.31. 4년 연장)
	추경호의원	2017. 7. 28.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2017.12.31.→2020.12.31. 3년 연장)
	박광온의원	2017. 8. 4.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확대 (2017.12.31.→2020.12.31. 3년 연장. 중소기업 투자액 공제율 2~3%p 확대)

주: 오제세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박광온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제

- 설비투자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2021년 전망값을 사용하고, 2022~2023년은 2021년값을 연장
- 동 비용추계는 법인세 공제액을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함

○ 현 제도의 단순 일몰 연장과 공제율 수준을 일부 축소한 후 일몰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1) 현 제도를 유지하며 일몰기한만 5년 연장
- (시나리오2) 환경보전시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에너지절약시설의 중소기업 공제율 수준으로 축소·통일한 후 일몰 5년 연장

2) 추계 방법

○ 추가 재정소요= 세액공제액 × 당기 또는 증가분 비중 × 공제율 변화

3) 재정수입 증감

○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공제율 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에너지/환경시설 일몰 5년 연장 (2018.12.31.→ 2023.12.31.)	−2,335억원
시나리오 2	환경보전시설 중소기업 공제율 4%p 축소 + 일몰 5년 연장	−2,298억원

- (시나리오1) 제도 일몰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연평균 2,335억원(총 1조 1,6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환경보전시설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에너지절약시설의 중소기업 공제율과 동일하게 축소하고, 일몰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연평균 2,298억원(총 1조 1,48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수의 설비투자지원제도 존재, 설비별 공제율 및 일몰 기한이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주요 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일몰 현황〉

대상	일몰기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2019. 12. 31.	1%	3%	7%
안전설비	2019. 12. 31.	1%	3%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2019. 12. 31.	1%	3%	6%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2018. 12. 31.	5%	7%	10%
에너지절약시설	2018. 12. 31.	1%	3%	6%
환경보전시설	2018. 12. 31.	1%	3%	10%

Ⅲ 재산과세 분야

1.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3억원 상향조정할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조 50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1세대 1주택 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액을 3억원씩 상향조정할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1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누진세율 적용

○ 과세항목 및 과세기준금액

- 주택분: 1주택자 9억원 초과분, 다주택자 6억원 초과분
- 종합합산토지분(나대지 등): 5억원 초과분
- 별도합산토지분(영업용토지 등): 80억원 초과분

○ 주택분 중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본공제 3억원 추가, 장기보유 세액공제(20~40%), 60세이상 세액공제(10~30%) 등 적용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5, rainman@nabo.go.kr)

○ 당해연도의 과세액(재산세 포함)이 전년도 세액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제한

종합부동산세액 = (공시가격 합산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명목세율 - 세액공제
주: * 주택, 토지 모두 80% 적용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과표확대 및 세율인상 등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되,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수 증감 영향

○ 시나리오1

- (세수증가요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 → 100%), 주택분, 종합 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등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 상한(50%) 폐지
- (세수감소요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 시나리오2

- (세수감소요인)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2018. 1. 19.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세율 인상,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이종구의원	2018. 2. 12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 고정, 주택분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조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종합부동산세의 2016년 과표규모 별 과세실적을 바탕으로,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및 세율 인상 등에 대한 세수효과를 먼저 추정하고, 주택분 공제상향은 따로 계산하여 반영

○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입은 2011~2016년 종부세액 연평균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 가정

- 연평균증가율: 주택분 5.6%, 종합합산토지분 6.2%, 별도합산토지분 6.3%

2) 추계 방법

○ 과세표준 금액별로 1인당 공시지가를 계산한 후, 개정안에 따른 과표증가, 세율인상, 세부담증가 상한폐지 등 종합적인 효과 추정

○ 주택분은 주택보유수(1주택자 6.9만명, 다주택자 20.5만명)에 따라 공제상향 효과 추정

〈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 2016년 기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00%)	세율 인상, 세부담 증가 상한 폐지*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조정	주택분공제 3억원 상향조정
29,837	6,369억원	23,937억원	−470억원	−1,458억원

주: *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현행 1.5조원→개정안 4.5조원)하는 경우 세부담증가 상한제에 따라 단기적인 세수효과가 제한되지만, 여기에서는 양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

3) 재정수입 증감

○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자 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전체	335,591	40,502억원
	주택분	273,555	2,678억원
	종합합산토지분	67,509	14,7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	7,953	23,074억원
시나리오 2	주택분	273,555	−1,918억원

- (시나리오1)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3억원 상향조정할 경우, 연평균 4조 50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1)]
- (시나리오2) 1세대 1주택 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액을 3억원씩 상향조정할 경우, 연평균 1,91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2)]

1) 전체적으로 연평균 4.1조원 규모의 세입이 증가하며, 이 중 약 70%를 법인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과 관련 전체 27.4만명 중 1주택자 6.9만명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20.5만명의 다주택자는 세부담이 현행세법 대비 7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과 관련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의 세부담이 현행대비 각각 166%, 30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법인보유 부동산에 과세되는 금액이 78~91%인 점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법인 1.6만개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전체적으로 27.4만명의 세부담이 모두 감소하며, 누진세 구조에 따라 보유주택가액이 많을수록 평균세액 감소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20.4만명은 기본공제 상향액 3억원보다 과세표준금액이 작아서 세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며(2016년 기준, 현행 33만원→0원),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속한 7.0만명은 평균적으로 363만원씩 종부세액을 부담하였으나, 기본공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세부담이 252만원으로, 112만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 상속 · 증여세율 최고구간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재 상속 ·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로, 과표 50억원 초과시 60% 세율 적용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연평균 8,564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상속인과 수증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구간별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과다한 부의 무상이전을 억제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경우, 상속 · 증여세수 증가 영향

○ 현재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30억원 초과 위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60%로 설정하는 개정안 발의

〈상속 · 증여세율: 현행 vs. 최고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현행	10%	20%	30%	40%	50%	
개정안	10%	20%	30%	40%	50%	60%

김세화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6, sehwakim@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2017. 3. 8.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시 60% 세율 적용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건당 과표 50억원 초과자의 과세표준은 최근 5년(2012~2016) 평균증가율(상속세 7.29%, 증여세 14.19%)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건당 과세표준 50억원 초과하는 과세표준 전체 중 50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근 5년(2012~2016) 평균치(상속세 69.4%, 증여세 66.2%)를 사용

○ 상속세액 계산시 기납부 증여세액공제를 공제하고 있어,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자의 산출세액 대비 증여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의 최근 5년(2012~2016) 평균치(14.7%)를 사용

○ 최근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2019년부터 3% 공제율을 적용, 산출세액 증가분에서 증여세액공제 증가분(상속세) 차감 후 공제율 적용

2) 추계 방법

○ 추계대상기간(2019~2023) 중 건당 과표 50억원 초과자의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부분을 추계하고, 이 부분의 세율 증가(10%p)에 따른 세수증가를 추계하되 이에 연동되는 증여세액공제(상속세)와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 증가분을 차감 반영

3) 재정수입 증감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시 세율 10%p 인상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소요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상속세 과세표준 50억 초과시 세율 10%p 인상	3,069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0억 초과시 세율 10%p 인상	5,494억원
	합 계	8,564억원

- (시나리오)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50억 초과시 세율을 10%p인상할 경우, 연평균 8,564억원(총 4조 2,81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라. 참고사항

❑ 상속세 최고세율로는 OECD 주요국 중 일본(55%)을 제외하고 우리나라(50%)가 높은 수준에 해당

〈OECD 주요국의 상속세 구조와 세율 비교〉

구 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세율	18~40%	40%	7~30%	5~45%	10~55%	10~50%
누진구조	12단계	-*	7단계	7단계	8단계	5단계

주: * 영국은 비례세율을 채택

3. 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기한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 등에서 3% ('18년: 5%)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완전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1,788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신고세액공제율을 2019년부터 1%로 인하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069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

○ 2016년 세법개정에서는 당초 10%의 세액공제율을 7%로 인하하는 대안 채택 및 본회의 통과

○ 2017년 세법개정 과정에서 7%인 세액공제율을 3%로 인하하되, 2018년은 5%로 하는 대안이 채택되어 본회의 통과

-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부분은 정부제출안과 동일

❑ 신고세액공제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불필요한 공제 축소를 위해 신고세액공제율의 즉시 폐지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수 증가 예상

김세화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6, sehwakim@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장(대안)	2017. 12. 1.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7% → 3% (2018년은 5%)
	정부	2017. 9. 1.	
	박주현의원	2017. 9. 29.	신고세액공제 폐지

주: 정부안 및 박주현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추계대상기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2012~2016년간 실적치의 평균증가율(연 5.6%)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2016년 기준 신고세액공제 실적과 변화 추이를 감안해 추계대상기간 중 신고세액공제의 순감규모를 기준으로 추계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이 기준일로부터 각각 6개월과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징수기준으로 환산(현행 기준으로는 2018년 귀속분은 공제율 5%, 2019년 이후 귀속분은 공제율 3%로 차등적용)

2) 추계 방법

○ (시나리오1) 2017년 세법개정시 발의된 박주현의원안('17. 9. 29. 발의)을 기준으로 현행과 채택 후의 재정변화를 추계함

- 박주현의원안은 신고세액공제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

○ (시나리오2) 신고세액공제율을 1%로 인하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재정 변화를 추계함

3) 재정수입 증감

○ 신고세액공제의 폐지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완전폐지	1,788억원
시나리오 2	공제율 1%로 인하	1,069억원

- (시나리오1) 신고세액공제를 2019년부터 완전폐지할 경우, 연평균 1,788억원(총 8,941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2) 신고세액공제율을 2019년부터 1%로 인하할 경우, 연평균 1,069억원(총 5,353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4. 일감몰아주기 과세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고 있는데, 과세강화를 위해 차감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증가 추계
-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시나리오1) 연평균 682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대·중견기업에 한하여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할 경우 (시나리오2) 연평균 259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이익을 의제하여 과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부의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2011년 도입

〈증여의제이익의 산정방법[1)]〉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α%) × (주식보유비율 − β%)

* 단, α%는 '정상거래비율'로 현행 대 / 중견 / 중소기업에 각각 5% / 20% / 50% 적용*
β%는 '한계보유비율'로 현행 대 / 중견 / 중소기업에 각각 3% / 10% / 10% 적용

주: *증여의제이익 발생 여부 판단에 사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은 대 / 중견 / 중소 30 / 40 / 50%로 적용

김세화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6, sehwakim@nabo.go.kr)

1)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대·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54회 제14차 본회의(2017.12.1.)를 통과하였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를 위해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이나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상속세 · 증여세수 증가예상

○ 2017년 11월 22일 발의된 김성식 의원안에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위원장 (대안)	2017. 12. 1.	과세대상에 교차·삼각거래 매출액 포함 대기업 과세대상 확대(20% 초과 및 일정 매출액 초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대·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중견·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집단(자산 5조원 이상) 제외
	정부	2017. 9. 1.	
	김관영 의원	2016. 9. 2.	과세대상에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상향조정(40→50%)
	김성식 의원	2017. 11. 22.	과세대상에 매출액 요건 추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차감규정 삭제 과세제외매출액 중 법률상 의무거래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
	박주현 의원	2016. 10. 20.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이언주 의원	2017 .5. 24.	과세대상에 매출액 요건 추가 과세대상의 정상거래비율 한도 30% 규정 중견 · 중소기업의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하향조정 과세제외매출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특수관계매출 포함

주: 정부안, 김관영의원안, 김성식의원안, 박주현의원안 대안반영폐기(2017. 12. 1)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차감규정 삭제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에도 불구, 기업들의 내부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 등 행태관련 변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추계대상기간(2019~2023년) 동안 과세대상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

2)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신고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집단 규모별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차감 여부에 따른 증여세 산출 세액 변화를 추계하고, 이에 증여신고세액공제율(3%)을 차감 반영

- 중소기업 우대 등 정책적 선택사항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차감 유지 시나리오를 별도로 설정하여 추계

〈시나리오별 α 및 β의 변화[1)]〉

(단위: %)

구 분	현행 ('17.12.1.통과법률)		시나리오 1 (대 · 중견 · 중소)		시나리오 2 (대 · 중견)[2)]	
	α	β	α	β	α	β
대기업	5	3	0	0	0	0
중견기업	20	10	0	0	0	0
중소기업	50	10	0	0	50	10

주 1) α 및 β는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특수관계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에서 각각 차감되는 비율을 의미
2) 중소기업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3) 재정수입 증감

○ 일감몰아주기 과세 보완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대 · 중견 · 중소	682억원
시나리오 2	대 · 중견*	259억원

주: * 중소기업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경우

- (시나리오1) 대 · 중견 · 중소기업 모두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할 경우, 연평균 682억원(총 3,409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 (시나리오2)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 · 중견기업에 한하여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지 않도록 할 경우, 연평균 259억원(총 1,295억원)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

Ⅳ 소비과세 분야

1.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1) 연평균 5,230억원,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2) 연평균 6,613억원, 1억원으로 상향조정 시(시나리오3) 연평균 7,96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납부면제점을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시나리오4) 연평균 8,74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현행 간이과세제도 적용금액인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을 상향조정[1)]

○ 간이과세자 중 연간 공급가액 2,4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시 면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

❑ 간이과세 적용금액 기준 상향에 따라 세수 감소 예상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hkkim@nabo.go.kr)

1)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4,8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에 대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한다. '일반과세'는 세금계산서 작성·신고 의무가 수반되는 반면, '간이과세'는 신고 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2016. 7. 6.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1억원 (※ 서영교의원안은 면제점 조정안 (2,400만원→4,800만원) 포함)
	박준영의원	2016. 9. 27. 2017. 11. 22.	
	서영교의원	2017. 11. 2.	
	정인화의원	2017. 1. 25.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8,000만원
	김철민의원	2017. 2. 3.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9,000만원
	이찬열의원	2016. 8. 19.	※ 면제점 기준금액 2,400만원→3,000만원
	나경원의원	2017. 4. 3.	※ 면제점 기준금액 2,400만원→3,600만원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세통계연보 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매출구간(과표구간)별 신고 내역을 활용

- 각 매출 구간 내에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동일 분포로 가정

○ 추계기간(2019~2023년) 중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부가가치세수 증가율 전망치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2022~23년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2)]

2) 추계 방법

○ 일반과세 매출분 × 일반과세분 중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비율 × 실효세율 변화분

2)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2017.11.)

<세부 추계 방법: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 시>

변수값	세부내용
일반과세 매출분 중 동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대상	49.2조원(이하, '16년 신고 기준)
일반과세 매출분 중 동 개정안에 따른 간이과세 전환비율	현행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 매출분 비율은 47.5%이며, 동 개정안으로 간이과세 구간이 확대된 후에도 매출구간별로 그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현행 4,800~7,2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 매출분 14.7%[3] 동 개정안에 따라 4,800~7,200만원 구간의 일반과세분 32.7%(=47.5%-14.7%)이 간이과세로 전환
실효세율 하락분	전환대상 일반과세자의 실효세율(4.33%)와 현행 간이과세자 실효세율(0.40%) 간 차이는 3.93%

3) 재정수입 증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자 수 ('16년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징수기준)
시나리오 1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8,000만원	44.4만명	−5,230억원
시나리오 2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9,000만원	58.2만명	−6,613억원
시나리오 3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1억원	70.1만명	−7,966억원
시나리오 4	-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1억원 - 면제점 기준금액 2,400만원→4,800만원	77.5만명	−8,742억원

3)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매출 4,800만원 초과 구간에서도 간이 과세자 발생한다.

- (시나리오1)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5,23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9,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6,61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3)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7,966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4)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원 + 면제점 기준금액 4,8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연평균 8,74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시나리오3 대비, 추가 776억원 감소) 예상

2. 택시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및 유류세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부탄 1kg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 감면 제도를 5년간 일몰연장 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612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99% 경감제도를 5년간 일몰연장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2,468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택시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료에 대한 세금 및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제도

❑ 일몰도래 시 지속적으로 일몰연장 및 기존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가치세수 감소 예상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2018. 1. 5.	택시연료인 부탄 1kg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40원 감면제도의 일몰을 5년간 연장
	이찬열의원	2018. 1. 10.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99% 경감하는 제도의 일몰을 3년간 연장

장윤정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9, yjchang@nabo.go.kr)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택시에 대한 감면실적은 조세지출예산서 상 각년도 수치를 사용

○ 연장된 일몰기간(2019~2023)에도 최근 5년(2012~2016)간 감면실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유지될 것을 가정함

- (시나리오1)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실적의 최근 5년간 추이: 연평균 0.3% 감소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실적>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개별소비세(A)	551억원	522억원	501억원	492억원	544억원	522억원
교육세(B=A×15%)	83억원	78억원	75억원	74억원	78억원	78억원
합계(A+B)	634억원	600억원	576억원	566억원	622억원	600억원
전년대비 증감률	-	−5.3%	−4.0%	−1.8%	10.6%	−0.3%

자료: 각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 (시나리오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최근 5년간 추이: 연평균 4.5% 증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실적>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감면율	90%	90%	95%	95%	95%	-
감면액	1,513억원	1,551억원	1,657억원	1,875억원	1,901억원	5.9%
감면 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추정치	1,681억원	1,723억원	1,744억원	1,974억원	2,001억원	4.5%

자료: 각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2) 추계 방법

○ 이용가능한 최근실적인 2016년 조세감면액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연장함

3) 재정수입 증감

○ 택시 지원을 위한 조세경감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택시연료인 부탄 1kg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40원 감면 일몰 5년 연장	−612억원
시나리오 2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99% 경감하는 제도의 일몰을 5년간 연장	−2,468억원

- (시나리오1) 택시연료인 부탄 등에 대해 1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5년간 일몰연장하는 경우, 연평균 612억원(총 3,061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99% 경감하는 제도를 5년간 일몰 연장하는 경우, 연평균 2,468억원(총 1조 2,339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3.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3,94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50%인 6,000원을 감면하는 경우(시나리오2) 연평균 1,97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최근 「개별소비세법」은 최초 도입 시와 같은 사치세 성격보다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세로의 활용도가 큰 바, 과거의 사치세 관점일 때 과세하였던 일부 항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별소비세법은 1977년 단일세율 부가가치세 도입당시 소비과세 역진성 교정을 위해 사치세 성격이 강한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8년 현재의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2015년), 로열젤리(2016년) 등이 최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감면에 따라 개별소비세수 감소 예상

장윤정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9, yjchang@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2016. 9. 8.	회원제 골프장 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국세통계연보 상 개별소비세 신고통계에 기초하여 추계함

○ 회원제 골프장 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나리오1)

○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50%인 6,000원을 감면(시나리오2)

2) 추계 방법

○ 최신 자료에 해당하는 2016년 신고인원수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2.4%)로 연장하여 추계대상기간 중 신고인원 수 추산

○ 신고인원 수에 시나리오별 개별소비세율을 곱하여 개별소비세수 증감분 추계

○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30%), 농특세(30%)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개소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의 10%)도 합산하여 추계함

3) 재정수입 증감

○ 회원제 골프장 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따른 2019 ~ 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회원제 골프장 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3,945억원
시나리오 2	회원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 감면	−1,973억원

- (시나리오1)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연평균 3,945억원(총 1조 9,725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 (시나리오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 감면할 경우, 연평균 1,973억원(총 9,86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라. 참고사항

❑ 일본의 경우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서 골프장 입장세를 징수[1)]

○ 중앙정부에서는 골프장 입장세에 대해 최고세율을 1,200엔으로, 표준 세율을 800엔으로 제시

○ 후쿠시마현의 경우 골프장의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총 11등급으로 관내 골프장을 분류한 후 1등급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한세율 1,200엔을, 가장 낮은 등급인 11등급 골프장에 대해서는 350엔을 부과

1) '한국조세연구원,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0.7.)'을 참고하였다.

V 기타 분야

1.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 유치원 관련 지방세감면제도를 최소납부제도(감면율 85%) 예외항목으로 지정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85%에서 100%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183억원의 재정수입 감소 예상

가. 개 요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는 지방세감면제도를 통해 100% 면제를 적용받는 항목 중 일부에 대해 특례제한을 두어 최소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 면제하는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특례제한을 두어 85% 감면율 적용(지방세 최소납부제도)

- 다만 농기계류, 교육기관 등은 예외항목으로 하여 100% 감면율 적용

○ 지방세 최소납부제도에 따라 교육기관별로 지방세감면율이 달라짐

- 초·중·고등학교(최소납부 예외항목): 일몰규정 없음, 100% 면제
- 유치원·어린이집(최소납부 적용항목): 일몰 2018.12.31., 85% 감면

❑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라 일몰폐지 및 최소납부제도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수 감소 예상

*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최소납부 적용)은 2017. 12. 8. 의결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5, rainman@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위원장 (대안)	2017. 12. 8. (원안가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방세 최소납부제도 적용 (예외항목에서 제외)
	박성준의원	2017. 12. 13.	유치원 관련 지방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규정(2018.12.31.) 폐지 및 지방세최소납부제도 예외 적용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2016년 지방세 감면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면실적이 통합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업체수,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감면실적 추정

- 2016년(업체수, 평균아동수): 어린이집(41,084개, 35명), 유치원(8,987개, 78명)

○ 2011~2016년 동안 유치원수 및 유치원 아동수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2) 추계 방법

○ 과거 추이를 반영하여 2016년 감면액을 기준으로 분석

- 유치원·어린이집의 취득세 감면액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2012년 720억원에 달한 후 개원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 2016년 193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재산세 감면액은 2015년 이후 270억원 내외 규모를 유지

○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개소 수가 적으나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감면 실적 추정

○ 현행세법에 따라 동 감면제도는 2018.12.31.까지 감면율 85%를 적용하게 되며, 개정안 시행 시 2019년부터 감면율 100%가 적용되고 일몰조항 폐지

<개정안에 따른 연간 감면액: 2016년 실적기준>

기준	2018년				2019~2023년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합계	감면율	취득세	재산세	합계
현행세법(A)	85%	63억원	92억원	155억원	일몰종료	-	-	-
개정안(B)					100%	74억원	109억원	183억원
비교(B-A)					100%	74억원	109억원	183억원

3) 재정수입 증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대상수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전체	9,064개소	−183억원
	취득세 감소분	258개소	−74억원
	재산세 감소분	8,806개소	−109억원

- (취득세 감소분) 현행세법상 일몰이 종료되는 2019년부터 유치원 신규등록업체 258개소가 개소당 평균적으로 2,877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개정안 적용시 세부담이 0원

- (재산세 감소분)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 등 총 8,806개소가 개소당 매년 123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개정안 적용시 동 세부담이 0원

2.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 현행 부가가치세입의 100분의 11을 지방소비세로 하고 있는 것을 16%까지 연간 2~3%p씩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연평균 4.3조원의 국세수입 감소와 동일한 액수 지방세입 증가 예상
-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5%p, 2020년부터 현재보다 10%p 인상 시(시나리오2) 연평균 8.8조원, 2019년부터 10%p 인상 시(시나리오3) 연평균 9.6조원의 국세수입 감소와 동일한 액수 지방세입 증가 예상

가. 개 요

❑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00분의 11(이하 '지방소비세율')을 지방소비세로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수입 확충 등을 목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상향조정

○ (연혁) 2010년 최초 도입 시 부가가치세의 5% → 2014년 11%로 인상

○ (규모) 2017년 기준 지방소비세수는 7.3조원

❑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감소하나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수 증가 예상

○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이 효과를 감안하면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분은 지방소비세 증가분보다 적음

장윤정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9, yjchang@nabo.go.kr)

나. 관련 법률안 현황

법률안	제안자 (대표발의)	제안일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2016. 11. 1.	개정 첫해 13%, 다음 해부터 16%로 단계적 인상
	김현미의원	2016. 7. 20.	개정 첫해 16%, 다음 해부터 21%로 단계적 인상
	이찬열의원	2016. 10. 19.	개정 첫해 14%, 다음 해 17%, 3년차부터 20%로 단계적 인상
	박맹우의원	2016. 5. 30.	개정 첫해 12%~5년차 16%까지 매년 1%p씩 인상
	김민기의원	2016. 6. 9.	16%로 상향조정

다. 비용추계

1) 추계 전제

○ 현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확충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발의안보다 높은 지방소비세율을 가정한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3) 시행 첫해부터 10%p 상향조정

2) 추계 방식

○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재정전망(2017. 10.)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전망치에 의거하여 추계

- 지방소비세= 재정전망 상 부가가치세수÷(100%-11%)×지방소비세율의 방식으로 추계

- 2022~2023년은 2021년의 경상성장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부가가치세수 전망치>

		2019	2020	2021	2022	2023
부가가치세수 전망치	A	77.4조원	82.1조원	85.9조원	89.9조원	94.1조원
부가가치세수 + 지방소비세수 추정치	B= A/0.89	87조원	92.2조원	96.5조원	101.0조원	105.8조원

3) 재정수입 증감

○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에 따른 2019~2023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 증감은 다음과 같음

<2019~2023년 재정수입 증감>

구분	기준	연평균 재정수입 증감*
시나리오 1	2019년 13% (현행 +2%p) 2020년 이후 16%(현행 +5%p)	−4.3조원
시나리오 2	2019년 16%(현행 +5%p) 2020년 이후 21%(현행 +10%p)	−8.8조원
시나리오 3	2019년 이후 21%(현행 +10%p)	−9.6조원

주: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지방세수이며,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에 유의

- (시나리오1) 연평균 4.3조원(총 21.5조원)의 국세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수 증가
- (시나리오2) 연평균 8.8조원(총 43.9조원)의 국세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수 증가
- (시나리오3) 연평균 9.6조원(총 48.2조원)의 국세수입 감소, 지방소비세수 증가

2018 미리 보는 법안 비용추계

발간일 2018년 3월 30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8)

ISBN 978-89-6073-059-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

건전한 재정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국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2-001628-10